

발 간 등 록 번 호

11-1192000-000039-01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2013. 8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발 간 사

공유수면(公有水面)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나라 공유수면은 육지보다도 5배 가까운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의 생활과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책무입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이 산골짜기로부터 넓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국토 전역에 분포해 있어 행정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의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한 만큼 공유수면 관련 법령도 부가적인 설명이나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을 참고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10여년 전에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공유수면 업무 안내서를 발간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령이 통합되고 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제도상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 안내서 발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공유수면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과 대법원 판례 등을 함께 수록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공유수면 업무추진과 민원해소 및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업무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보전 및 이용·개발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문해남





Contents

I. 공유수면의 의의	1
1. 공유수면의 의미	3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6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9
II. 공유수면 관리	25
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27
2. 공유수면 관리청	27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29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47
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56
6. 기타 사항	63
III. 공유수면 매립	65
1. 공유수면 매립 개요	67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72
3. 공유수면 매립면허	80

4. 공유수면 매립공사	99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109
6. 기타 사항	120
IV. 공유수면 관련 질의회신	129
1. 공유수면 관리	131
2. 공유수면 매립	179
3. 법령해석	199
V. 공유수면 관련 판례	211
1. 공유수면 관리	213
2. 공유수면 매립	242
VI. 기타 참고사항	285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287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298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	306

공유수면의 의의

1. 공유수면의 의미 ○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

약어 안내

- ‘공유수면법’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말함
- ‘공유수면 관리 규정’이란 공유수면법 제2장(공유수면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함
- ‘공유수면 매립 규정’이란 공유수면법 제3장(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규정을 말함
- ‘업무처리규정’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말함
- ‘법, 영, 규칙, 규정’은 공유수면법령과 업무 처리 규정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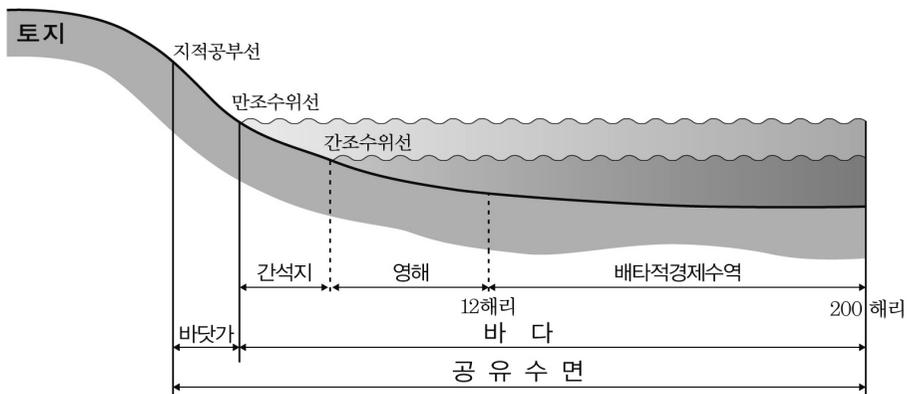
1. 공유수면의 의미

가 공유수면의 정의

-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제1호)

■ 바다·바닷가

- “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
- “바닷가”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 ※ '99.8.8이전 법령에서는 “빈지(濱地)”라고 함
 - ※ 바닷가(빈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공유수면에 처음부터 포함되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97.4.10부터 공유수면에 포함됨



■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음
-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대상임
 - 단, 공유수면 매립은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흐르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지면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이므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지 않아도 물이 없어 사실상 토지화된 국유인 하천, 유지, 구거, 바닷가 자체만은 공유수면법 상의 매립대상이 될 수 없음

☞ 포락지

- “포락지(浦落地)”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바다에 속한 포락지와 국유의 내륙 포락지는 공유수면에 해당됨
- 실제로는 공유수면이나 지적공부상 임야 등 토지로 등재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락지”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이고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임야나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매립면허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임

나 공유수면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유수면

■ 공유수면 관리 규정의 적용 배제

-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 대상 공유수면)
 - ※ '99.8.9 전문개정 된 이후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구 공유수면매립법은 국유인 하천을 다 같이 공유수면의 범위에 포함하되,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을 적용받거나 준용 되는 하천은 구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 ※ 농업생산기반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의 농지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 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암반 지역 등에 물을 저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홍수면 및 저수부지를 말함),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입보, 용·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함
 - ⇒ 등기부상 소유자가 국(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지개량조합, 한국농어촌공사로 등기되어 있음
-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 공유수면 매립 규정의 적용 배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매립하는 경우
 - 이는 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구거나 저수지 등을 다른 공공시설로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임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하여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매립하는 경우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가 적용법률

공유수면 관리 (제2장)	공유수면 매립 (제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규정이자 일반규정임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점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함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규정이 정하는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함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공히 공유수면 상태를 유지하여야 되고 원상회복이 전제됨 <p>※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은 피허가자 소유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등기조치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기본규정이자 일반규정임 •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공단의 조성, 발전소 건설부지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함 •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한 관리자의 동의 및 매립절차 등도 이 규정에 따름 • 공유수면의 매립은 토지를 조성, 소유권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의 상실이 전제됨 <p>※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됨</p>

나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준용하는 행위

○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 축제식양식어업은 수산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된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므로 별도로 공유수면 매립 관련 규정에 의한 매립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공유수면법 제46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축제식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구역은 피면허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 그러나 공유수면에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양식장 축조행위는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후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왜냐하면,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위하여는 공유수면을 토지로 조성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관계없이 공유수면 매립 관련 규정이 적용됨

○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 ☞ 의장안벽, 선가대 등 조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또는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따라 모두 설치가 가능하나, 양 법률의 적용 차이는 소유권의 취득여부에 있음

○ 조력(潮力)이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다 관리 주체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위임),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위임),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라 법률적 권리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 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한 경우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며, 시설물은 설치자의 소유임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사용면적에 대한 점용·사용료를 부과·징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는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지로 조성할 권리(소유권 취득)를 설정하여 주는 것임 조성된 토지중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는 피면허자가,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과 잔여매립지는 국가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함 매립면허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함

마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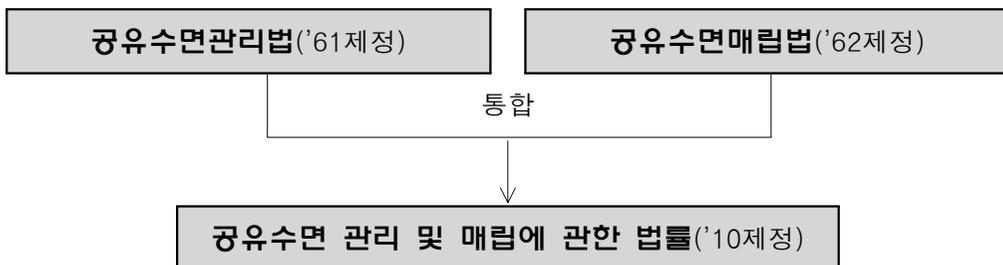
-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공유수면 등에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련기관의 반대가 없어야 함
-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피허가자 등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면허관청이 공히 취소권 등 감독권을 가짐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가 공유수면 관련 법령 현황

구 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 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72호) - 제정일 : 2010. 4. 15, 시행일 : 2010. 10. 16.
시 행 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449호) - 제정일 : 2010. 10. 14, 시행일 : 2010. 10. 16.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00호) - 제정일 : 2010. 10. 15, 시행일 : 2010. 10. 16.
고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1-490호) - 제정일 : 2011. 9. 6, 시행일 : 2011. 9. 6.

나 공유수면 관련 법률의 변천



다 공유수면관리법의 제·개정 연혁

공포번호	848	공포일자	1961.12.19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
〔신규제정〕					
공유수면을 관리·보전·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위해의 예방·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유의 수면 및 수류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과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河·海·湖·沼 등으로서 이는 중앙관리청인 국토건설청장과 지방관리청인 서울특별시청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함 ② 공유수면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준설, 굴착, 토석채취, 식물재배, 점용, 위생상 유해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 공유수면지역내에서 선거, 선유, 하양장, 잔교, 호안, 방파제, 부두, 갑문 또는 견고한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④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점용료등의 수입은 중앙관리청의 수입은 국고로, 지방관리청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 ⑤ 공유수면에서의 유독물·동물의 사체류를 버리는 행위,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등을 금함 ⑥ 공유수면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필요할 때 또는 공공위해의 제거 또는 경감이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⑦ 허가의 취소·변경등으로 손해를 받은 자에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하도록 함 ⑧ 중앙관리청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지방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⑨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함 					

공포번호	1632	공포일자	1964. 5. 2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 개정(1962. 6.18, 법률 제1092호)으로 경제기획원의 국토건설청이 폐지되고,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1746	공포일자	1966. 2.23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p>① 수면이나 수류로도 볼 수 없어 관례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던 빈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함</p> <p>② 공유수면의 관리청별 관리수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미납점용료에 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p> <p>③ 공유수면내의 무단공작물 및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의 시설물 기타의 공작물등은 무상으로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p>					
공포번호	5338	공포일자	1997. 4.10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일부개정〕					
“경쟁력 10퍼센트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등을 위한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감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5453	공포일자	1997.12.13	제 명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허가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공포번호	5914	공포일자 시 행 일	1999. 2. 8 1999. 8. 9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전문개정〕					
공유수면의 점·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①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조정
- ② 포락지·간석지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제방축조 또는 토지의 원상을 복구토록 함
- ③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관광호텔등 건축물의 설치 허용
- ④ 부두·방파제 등 공작물설치는 공사의 시공에 따른 안전, 환경피해 최소화 등 공유수면관리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제도를 도입함
- ⑤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업자도 공유수면점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
- ⑥ 공유수면 무단점·사용자에게는 점·사용료의 120퍼센트를 변상금으로 징수하고,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함
- ⑦ 전복·침몰·방치된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하거나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7481	공포일자 시행일	2005. 3.31 2005.10. 1	제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 중 특정지역개발계획수립지역 및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감면대상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8039	공포일자	2006.10.4	제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해양사고 등으로 침몰이나 난파 등을 당한 선박이 해양에 방치됨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급히 그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치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공유수면 내 행정조사 규정에 관계공무원의 성명, 조사 목적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대상자들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8819	공포일자 시행일	2007.12.27 2008.6.28	제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일부개정〕					
<p>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장기간 점·사용하거나 선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허가받은 점·사용의 전대를 금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점·사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p> <p>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점·사용허가에 조건을 붙이며, 그 밖에 공유수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사용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점·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p>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또는 승인의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경우 협의·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수면에서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원상회복의무 및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사후관리를 강화함 (3) 민간인에 의한 점·사용허가와외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점·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점·사용기간 및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6조의2 신설 및 법 제8조제3항)

- (1)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 (2)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3)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의 구체화(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

-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고,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17조제2항·제3항)

- (1)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불법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법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9551	공포일자 시행일	2009. 3.25	제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료는 그 일부를 해당 배타적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금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배타적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9736	공포일자 시행일	2009. 5.27	제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일부개정〕					
<p>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양벌(兩罰)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p>					

라 공유수면매립법의 제·개정 연혁

공포번호	986	공포일자	1962. 1.20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신규제정〕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건설청장의 면허를 얻도록 함 ②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주무부·청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도록 함 ③ 조선공유수면매립령(1923년3월13일제령 제3호)을 폐지함 					
공포번호	1633	공포일자	1964. 5. 2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 개정(1962. 6.18, 법률 제1092호)으로 국토건설관리청이 폐지되고,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1821	공포일자	1966. 8. 3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림부장관이 분장하고 있던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권을 건설부장관에게로 통합함 ② 토지개발연합회에 대한 공사대행규정을 신설함 ③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포번호	2411	공포일자	1972.12.30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현행법상으로는 건설부장관이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농경지조성을 위한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매립지를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이관하기 전에 행할 매립공사의 범위가 모호한 바, 건설부장관은 방호·방수시설의 설치를 하고 농림부장관은 개답·관개시설등의 설치를 행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행하는 농경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3901	공포일자	1986.12.31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공유수면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토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 10년을 단위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립면허는 이 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만 하도록 함					
② 도시계획구역과 그 인근지역등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도록 함					
③ 매립공사로 인한 손실보상대상구역이 종전에는 공유수면매립시행구역에만 한정하던 것을 직·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의 공유수면도 피해보상대상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세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④ 종전에는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사업비에 관계없이 매립지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사업비(적정이윤 포함) 상당분만을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 우선권을 주도록 함					
⑤ 매립공사가 준공된 후 5년 이내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					
공포번호	5337	공포일자	1997. 4.10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경쟁력 10퍼센트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인 매립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인 매립지를 공장 등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지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					
① “공유수면”의 개념에 빈지를 포함시키고 매립지중 빈지지역을 국가에 귀속토록 함					
② 산업단지개발사업자가 국유인 잔여매립지를 매수할 경우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③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공장·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관광호텔 등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5453	공포일자	1997.12.13	제 명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면허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공포번호	5911	공포일자 시행일자	1999. 2. 8 1999. 8. 9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전문개정〕					
<p>갯벌 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매립지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립지의 용도변경제한기간을 장기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p> <p>②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된 매립예정지안에서는 당해 매립예정지의 이용에 관한 어업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사업 등에 있어 불필요한 보상비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p> <p>③ 매립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함으로써 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립공사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p> <p>④ 종전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하도록 함</p> <p>⑤ 종전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공인가전까지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p> <p>⑥ 종전에는 준공인가후 5년이내에는 매립한 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립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강화하여 준공인가후 20년동안 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기목적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p>					

공포번호	7482	공포일자 시행일자	2005. 3.31 2005.10. 1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
〔일부개정〕					
<p>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매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립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지정항만구역안 외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법 제9조) 항만법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각종 사무는 종전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되, 그 외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함</p> <p>나. 매립목적변경 확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립목적변경이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p> <p>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법 제38조의2제1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매립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함</p>					
공포번호	8820	공포일자 시행일자	2008. 6.28 2008. 6.28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
〔일부개정〕					
<p>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p> <p>(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p>					

립 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골자

공포번호	10272	공포일자 시행일자	2010. 4.15 2010.10.16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정]					
<p>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사용기간을 30년·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가.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p> <p>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효율적 시행을 도모함</p> <p>나.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p> <p>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p> <p>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p> <p>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p> <p>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p>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II

공유수면 관리

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
2. 공유수면 관리청 ○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
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
6. 기타사항 ○

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함
 - 따라서 공유수면의 이용은 공유수면의 보전 및 보호가 먼저 고려되어야 함

2. 공유수면 관리청

-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청인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이를 지방해양항만청장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관리청은 아래 표와 같음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및 제24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구 분	관 리 청 (법 제4조)	위임관리청 (법 제60조 및 영 제73조)
(1) 배타적경제수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 국가관리항 ○ 지방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중 부산남항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5) 배타적경제수역과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제주지역 무역항·연안항의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임

☐ 공유수면의 범위(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17.가.

연안관리법 제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해안선 : 해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에 달할 때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가 개요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우 개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허가” 대신 “협의 또는 승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나 절차 및 법적성격은 허가와 동일함
 - 공유수면관리청이자 사업시행자인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도 사업시행부서에서 허가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유수면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개인이 신청한 허가와 동일하게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함
 - ※ 공유수면법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하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부서의 협조(싸인)만을 받을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로 볼 수 없음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대상을 법 제8조에서 11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에서는 점용·사용료를 받는 유형을 10가지로 분류하여 요율을 정하고 있음
 - 점용·사용 목적은 11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분류하여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의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점용·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 ☞ 물의 인수·배수를 위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와 같이 2개 이상의 점용·사용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제5호에 따라 점용·사용을 허가토록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용·사용료는 규칙 별표 2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각각 부과·징수함

- ☞ 공유수면에서 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점용·사용허가하고 점용·사용료는 규칙 별표 2의 4호에 의거 채취료만 부과·징수함



나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
 -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관광숙박업)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기본방향 : 연안경관제도 시행 및 건축물·시설물의 관리 체계 구축
- 연안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연안경관제도 마련
 - 연안개발사업에 대한 연안경관 검토사항을 연안관리조례에 포함
 - 국가,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에 관리 의무 부여
 - 생태성, 쾌적성, 친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연안경관 평가 및 관리 지침(가침) 마련
 - 연안 개발사업 추진 시 개별 건축물 입지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연안경관 평가체계 구축
 - 연안경관 평가결과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 등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
 - 연안경관 유형(항만·어촌·해수욕장·생태 경관 등)을 고려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시범 사업 추진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포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 해상공작물(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질의 회신(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건축58550-1482, '99.4.26)

【 질의요지 】

지반이 없는 공유수면 아래 해상공작물(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바다에 파일을 박아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공작물을 설치
- 부선형태의 구조물 위에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공작물을 설치
- 해상유람선 등 이미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구조의 선박(기관은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 회신내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 질의대상 공작물(건축물)의 모두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축조된 선박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모든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일부규정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지도 포함)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 포락지라 함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곳이어야 함
 -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점용·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첨부서류를 구비
 -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한함)로서 이 경우의 예로서는
 - 도로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묘지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절한 보호·관리가 곤란한 경우
 -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서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외함
 -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허가기준

-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제12조)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협의·승인)하여서는 아니됨
 - ☞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라 함은 당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되는 권리를 말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 ※ 대통령령(제12조제2항)이 정하는 공익사업
 -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 점용·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신청이 경합(먼저 접수된 신청서의 법정처리기간내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임)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허가함(영11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청한 것
-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다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절차

(법 제8조부터 제12조, 영 제4조부터 제13조, 규칙 제4조부터 제11조)

■ 점용·사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

- 신청(협의) → 심사 → 협의 → 허가(승인) → 고시 및 기록유지 → 허가의 변경 → 허가기간 종료 및 계속사용자 처리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의 신청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신청위치, 점용·사용의 목적, 사업추진계획(사업비, 공사추진계획), 해양오염 방지대책, 안전대책, 공작물의 존치기간, 공작물의 원상회복계획, 모래·규사 등 채취 시는 채취계획량 등
 - 점용·사용의 목적, 규모 등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 필요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 규칙 제4조제2항 제2호 별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 ※ 설계도서의 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등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해도).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지적측량도의 종류 : 현황측량도, 경계측량도, 분할측량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에는 현황측량도를 첨부하면 됨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권리자(법 제12조, 영 제12조) 해당여부 판단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수역에 인접한 구역 뿐만 아니라 점용·사용허가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말하나 단순히 인접 또는 인근에 위치하였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권리자가 될 수 없음

■ 허가(협의·승인)신청 사항의 심사

- 관리청은 우선 법령 적합 여부의 심사와 신청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장래 개발계획 저촉여부 등을 심사
 - 필요 시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점용·사용허가가 불가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없이 불허 또는 반려 조치를 취함
 -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여야 함

■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 심사결과 보완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후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현장조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시 유의사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당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법령상 적합하고 구비서류가 완비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일건서류와 공유수면조사서 및 관리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관계기관과 협의 시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항만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여야 함
 - 다만,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중 단순 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대상을 축소시킬 수 있으나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조선소선가대 설치 및 모래(규사)채취를 위한 기간연장허가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점용·사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 골재채취법·광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반드시 협의

- 당해 관리청은 이를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의견을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요청기관(부서)에 회신하고 의제처리기관(부서)에서는 이를 허가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특히, 지자체의 경우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시 공유수면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 등에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과는 이를 다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반드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회신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기 위해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광물인 규사채취와 무관하게 모래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만을 받은자는 광물(규사)을 채취할 수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부정적인 협의의견(부동의)이 제시된 경우에는 동 협의의견에 따라 그 이유를 분명히 하여 점용·사용을 불허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등 일건서류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협의기관이 협의의견 제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별지 7호 서식)에 의한 현장조사서에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의견 기술)을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송부하여야 함(협의기관에서 협의의견 제출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사진도 함께 송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승인)

- 공유수면관리청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와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허가하고 허가서를 교부함
 - 점용·사용허가내용(피허가자 인적사항, 장소, 면적, 목적, 기간, 점용·사용

의 유형,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및 허가조건

- 허가기간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장래개발계획, 인공구조물의 유형, 주변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기간 이내에 점용·사용을 허가하여야 함
- 허가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1호, 2호 및 4호의 경우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 15년
 3.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물을 공유수면에서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흙·모래·돌을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흙·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공유수면법에서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5년
 4. 물을 공유수면에서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는 행위 중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 30년
- ☞ 점용·사용허가는 원상회복을 전제하므로 허가기간을 '영구'로 할 수 없음
공유수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자연공물이므로 특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영구히 점용·사용토록 하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취지에 어긋남
-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당해 점용·사용에 직접 공여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직접

점용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 중 당해 점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공유수면의 면적(간접 점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별표 4에 의함)

- 점용·사용의 목적은 당해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목적은 구체적이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점용·사용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피허가자는 공유수면을 임의대로 점용·사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에 위배됨
- 허가조건 부여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란에 또는 “불입참조”로 기재 후 별지에 다음의 허가조건을 기재한 후 허가증과 함께 점용·사용허가신청자에게 교부
 - 허가조건
 - 점용·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원상회복 및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권리자·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유수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 부관(허가조건)의 한계
 -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안됨
 -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즉,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가혹한 부관은 아니됨

라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법 제17조, 영 제20조, 규칙 제15조·제16조)

- “실시계획승인”은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공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경우 구 공유수면관리법에서 '99.8.9부터 도입시행함
-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 대상행위
 -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은 1년, 신고는 6개월의 범위에서 1번만 연장 가능)
 - 실시계획 승인 대상
 -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 ☞ 다만,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로서 점용·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신고의 대상임
 - 법 제8조제1항제2호(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제3호(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법 제8조제1항제4호(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인공구조물의 규모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공사기간을 6월 이상 연장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 새로운 절차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신고대상

- 실시계획승인대상 이외의 모든 점용·사용행위는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임

■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 실시계획승인(신고) 신청 또는 변경승인(신고)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점용·사용허가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 지형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
- ☞ 공사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함
- 실시설계도서(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함)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점용·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건축물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계획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의 가설 건축물 등과 같이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선급법인(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 교부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점용·사용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증(신고확인증)을 교부함
- 준공의 확인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8조 및 규칙 제17조)

마 고시 및 기록유지(법 제8조제6항, 영 제9조)

- 점용·사용허가를 한 관리청은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의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신고), 준공확인 사항은 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유수면관리대장 및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입력) 및 유지하여야 함

바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사항의 변경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협의·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협의·승인)를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대상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기간의 단축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규정 제18조)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정산 및 환불 조치

○ 첨부서류

- 점용·사용허가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 한함)
-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관리청은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당초 허가 시와 동일하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함

■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공구조물의 규모 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연장

사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자 및 계속 점용·사용자에 대한 조치

(영 제8조, 규칙 제8조, 규정 제19조)

■ 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연장에 관한 안내서(규정 제19조 별지 제9호 서식)를 점용·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 계속하여 점용·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식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법 제8조제4항·제9조,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시에도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점용·사용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영 제22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가 개요

-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에 대하여 그 유형과 면적, 형태(직접 또는 간접)에 따라 점용·사용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함
- 점용료·사용료는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인접토지 가격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함

나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법 제13조, 영 제14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2분의 1)를 감면함
 -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
 - ☞ 상기자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사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개별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여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점용·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위해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향로표지법에 따라 사설향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방제장비 또는 자재(오일웬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 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하는 경우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다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으로 함
-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20일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
-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 시 이를 부과하고, 점용·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31일까지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점용료·사용료의 1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 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하여야 함

☞ 점용료·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면서 점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나 입법취지상 1년에 4회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3개월 미만의 점용·사용기간인 경우에는 일시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9개월인 경우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점용료·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 회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함

■ 납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공유수면법상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음

○ 점용료·사용료를 계속 체납하는 경우 피허가자에게 독촉,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의사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 점용·사용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함

○ “토지의 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

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이 결정함

-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함
 -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 이 경우 점용·사용할 공유수면의 연장선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토지로서 공시지가 또는 개별 토지가격이 형성된 가격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번지 또는 지번을 말함)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함. 이 경우 인접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

■ 점용·사용료 산정기준(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호안·물양장(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溝渠) 부지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과 해저 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과 해저 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船架臺)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m ³ /초당 연액 20만원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p>나. 가목 이외 용수</p> <p>관의 지름 100mm 이하: 월액 10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²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p> <p>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p>
<p>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p>	<p>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p>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p>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³)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

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시·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월할(月割)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흙·돌·모래·자갈·준설토 등의 채취와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의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흙 등의 채취가격과 인수관·배수관의 지름에 따라 부과·징수함

- 흙·돌·모래·자갈·준설토 등을 채취하는 경우 : 채취량을 기준으로 징수
- 물의 인수·배수의 경우 : 용수사용량 및 인수관·배수관의 지름을 기준으로 징수하되 인수·배수용 관로 등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별도로 징수

■ 점용료·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산정함

- 인접토지의 공시지가 등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되, 동일한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 대한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토지가격의 변동으로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액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시행령 제17조 관련)

점용료·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사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5/100+(증가율-500/100)×5/1,000}]

■ 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하여야 함(토지의 가격이 행정청의 착오로 다시 결정된 경우도 포함)
 -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여야 함

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가 원상회복(법 제21조, 영 제22조)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을 전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점용·사용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원상회복해야 함. 다만,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나 관리청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승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경우
 -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 점용·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경우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관리청의 승인을 얻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시설물·흙·돌, 그 밖의 물건(원상회복의 대상물)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함

- 이 경우 점용·사용자에게 미리 위치·종류·수량·귀속시기 등을 통지하되, 점용·사용자 등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방안 통보 참조(연안계획과-4753, '10.12.10)

나 방치선박 등 장애물 제거

(법 제6조, 영 제3조, 규칙 제3조, 규정 제5조부터 제9조)

-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방치된 폐자재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방치선박처리 독촉장을 송부하여야 함
- 방치선박등 장애물 제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거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담시킴
- 관리청이 제거처분 시 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
 - 방치된 선박의 명칭 및 내용
 - 방치된 선박의 위치
 - 제거예정일시
 - 제거방법
- 방치선박이나 폐자재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하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14일간 공고한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제거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그 선박이나 폐자재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처분하고자 하는 물건 등의 가액이 구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구매에 의한 처분시 구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 등의 제거와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함
 - 선박이나 폐자재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사항
 - 구매할 방치선박 등의 명칭 및 내용
 - 구매의 장소 및 일시
 -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다 공익을 위한 처분 및 허가 취소(법 제19조·제20조)

-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 유	조 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실시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의 필요한 조치

사 유	조 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인·관계문서 등의 조사, 토지 등에의 출입,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이 변경되어 필요한 경우 ○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명령

■ 허가를 취소한 이후 인공구조물 등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는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가 되고 그에 따른 처분이 따르게 됨

☞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중지 등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한 판례(대법원 93누5635)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라 금지행위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 제5조·제62조부터 제64조)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됨.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말함. 다만,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은 아닐지라도 손해배상 또는 장애물 등의 제거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의 직권으로 또는 관리청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당국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처벌하게 되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물론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을 받게 됨. 다만, 법인 또는 그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별 칙	법령위반자 (처벌대상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가축분뇨·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페타이어, 페스티로폼을 버리거나 흘려가게 하는 행위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 점용·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관리청의 방치선박 등의 제거,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공익을 위한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사용하게 한 자 ○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66조, 영 제7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3호 주소변경은 제외)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200만원
5.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5호	100만원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청이 청문대상 외에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바 조사 및 결과 처리(법 제55조, 규칙 제41조)

- 관리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내보이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 경우 허가여부를 불문함), 기타 공유수면관리상 취약지구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공사의 준공사항
- 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태 및 관리상태
-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
- 기타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사결과에 따라 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장애물 등의 제거 명령,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나 수면에 출입할 수 있으나, 그 점유자에게 관계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장소, 조사 또는 측량목적을 7일 전까지 통지하되 일출전·일몰후에는 그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음

■ 관리청은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토지 등을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6. 기타사항

가 권리·의무의 승계(법 제16조, 영 제19조)

-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승계함. 이 경우 법인의 발기인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
-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봄

나 손실보상 등 권리의 구제(법 제57조, 영 제71조)

- 관리청이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사용으로 손실을 입은 해당사업을 시행하는 자
 -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조사·측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 관리청
- 손실보상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재결에 따름

-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손실발생의 내용
-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 협의의 경위

다 공유수면 관리실태의 보고

(법 제55조·제56조, 규칙 제43조, 규정 제48조·제50조)

-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실태 등을 조사한 후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 매 반기별
 - 방치선박 등의 현황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실적 : 매 분기별
-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급 지자체의 장을 경유하여 보고함
- 관리청이 보고하는 공유수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해역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어 관리하는 해역을 포함함

III

공유수면 매립

1. 공유수면 매립 개요 ○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
3. 공유수면 매립면허 ○
4. 공유수면 매립공사 ○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
6. 기타사항 ○

1. 공유수면 매립 개요

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구 분	관 리 청 (법 제28조)	위임관리청 (법 제60조 및 영 제74조)
(1)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2) 항만법에 의함 무역항 ○ 국가관리항 ○ 지방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3) 그 외의 구역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단, 위 공유수면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 및 제245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허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임

-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 중 매립면허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나 주요 공유수면 매립 관련 제도 변화

■ 농업용지 매립면허관청

- '62. 1.20 국토건설청
- '64. 5. 2 건설부(농업·수산업 목적 매립면허는 농림부)
- '66. 8. 3 건설부
 - 단, 농림부장관이 면허·시공중인 사업은 계속 농림부장관 소관
- '78. 9.23 건설부(농업목적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에게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165호) 신설
- '99. 8. 9 해양수산부
 - 농지조성 및 축산업 목적의 매립면허를 농림부장관에게 위탁 하는 근거 규정을 공유수면매립법에 두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348호)에서 삭제
- '05.10. 1 농업목적의 매립면허 위탁규정 삭제(법률 제7482호, 대통령령 제19080호)
 - 단, 기 면허된 농업목적의 매립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08. 2.25 국토해양부
- '13. 3.23 해양수산부

■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제한

- '86.12.31 이후 : 5년
 - '86.12.31 법률 제3901호, 매립목적변경 제한 기간 신설
- '99. 8. 9 이후 : 20년 (기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5년)
 - '99.2.8 법률 제5911호, 투기목적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방지

- '10.10.16 이후 : 10년 ('99.8.9 이전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5년)
 - '10.4.15 법률 제10272호, 경제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 '62. 1.20 이후 ①매립면허 받은 자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②국가시설로 필요한 토지는 국유 ③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자체에 귀속
- '65.11.25 이후 ①매립면허 받은 자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②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방사제·돌제·배수시설로 필요한 토지는 국유 ③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자체에 귀속
- '86.12.31 이후 ①매립면허 받은 자가 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②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 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년간의 자금회수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하고 남은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③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④제2,3항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
 - 개발이익의 국가환수, 기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
- '97. 4.10 이후 ①빈지, 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자 ②빈지, 공용 또는 공공용 외에 매립지중 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년간의 자금회수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하고 남은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③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④제2,3항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자가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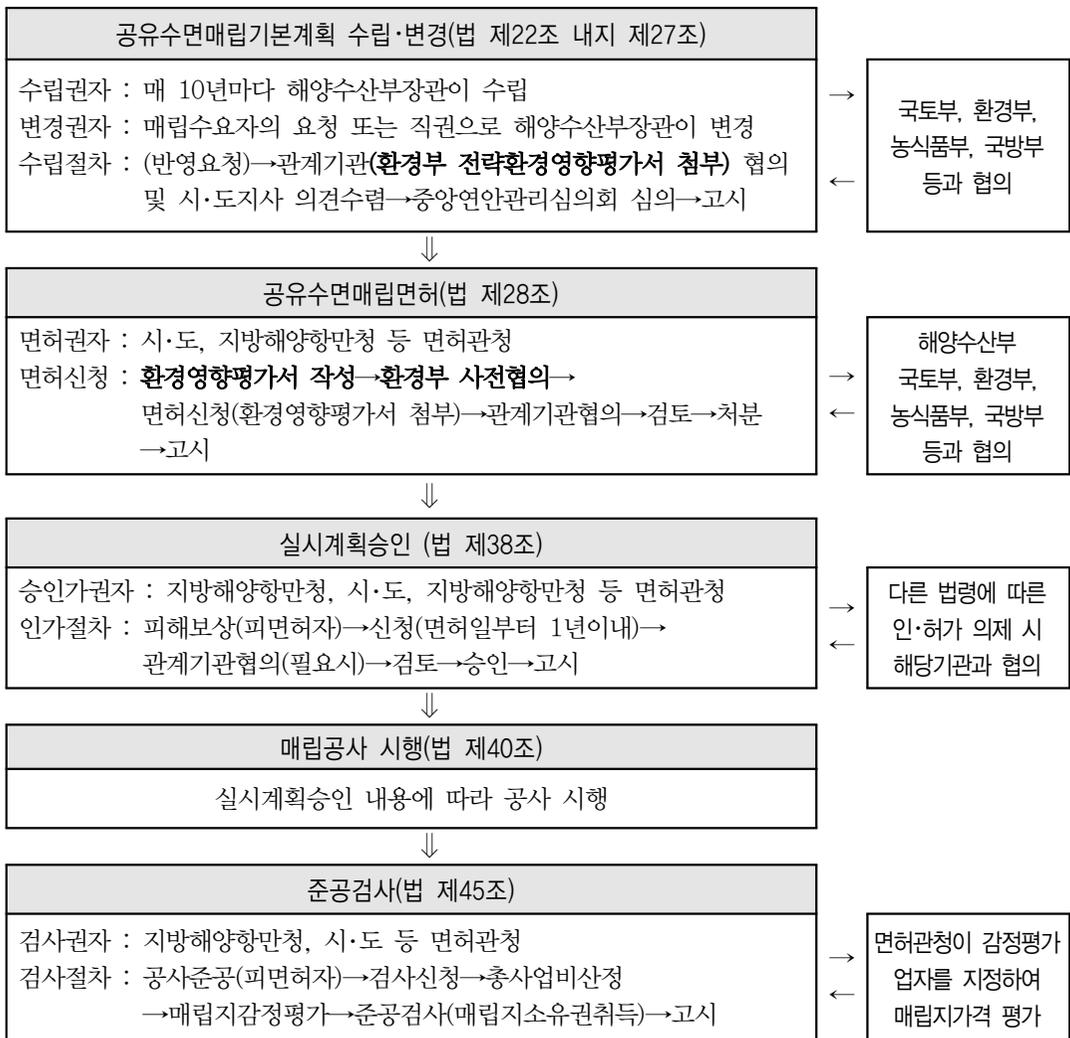
- '99. 8. 9 이후 ①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②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은 국가에 귀속 ③제1,2항 해당 매립지 외에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 ④제1,2,3항 외의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 매립사업의 주체

-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해안지역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어촌진흥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필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 <'86.12.31신설>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기타 필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 <'97.9.28개정>
-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매립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이 매립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 <'99.8.9개정>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이 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 <'05.10.1개정, 발전부분을 자회사로 분리한 한국전력공사 배제>
-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지정항만구역·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 국가·지자체가 매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 <'08.6.28개정>

- 지정항만구역·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 국가·지자체가 매립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 <’10.10.15개정>

다 매립업무 처리절차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가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법 제22조·제27조, 영 제25조·제26조, 규칙 제21조)

- **수립주기** : 10년
-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수립요건** : 매립기본계획은 다음 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
 -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수립절차** : 기본계획안 작성 →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의견수렴(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견 첨부)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고시 → 통보 및 역할
 - 관계부처 협의사항
 -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에 관한 사항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하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 경관·생태계·습지·수질오염 등 환경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호·관리 및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항만·어항구역·산업단지 및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 ☞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환경보전·수산자원보호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음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 근거 : 연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당연직 : 기획재정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중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각 1인
 - 위촉직 :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고시 및 통보(법 제23조, 영 제27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 고시내용 :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예정지의 위치

■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검토사항(영 제25조)

-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 파도·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및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이나 연안관리지역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나 매립기본계획의 반영(법 제23조·제24조, 영 제26조부터 제31조)

■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법 제23조, 영 제26조, 규칙 제21조)

- 요청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
- 요청대상 :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 필요 공유수면
- 제출서류 : 반영요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 사업계획서
 -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후의 비용·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 ☞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매립기본계획 우선 순위

- 같은 공유수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가능

-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한 것
- ②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내용

-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 매립목적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 매립으로 인한 다음의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사항
 -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 매립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환경 및 생태계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조사서 작성례

항 목	내 용
1) 매립요청지의 현황	가) 주변여건 : 매립요청지의 전경사진(바다인 경우에는 만조 및 간조시의 사진을 말함)에 매립요청지역을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행정구역이나 주요 지형·지물 등을 예시하여 설명 나) 주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요청지의 인근지역에 대한 매립면적(제곱미터)·매립목적·공사 기간 및 매립지이용실태 등 공유수면의 현황을 조사·기술 ○ 기타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조사·기술 다) 환경관련 지구·지역의 지정현황 : 매립요청지의 인근에 위치한 환경관련 지구·지역의 지정현황과 매립요청지와의 거리 등 개략적인 현황을 조사·기술
2) 환경·생태계의 현황	가) 매립요청지의 갯벌 또는 내륙 습지의 규모(제곱미터) 나) 생태계(인근 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육상 및 해양에서 관찰되는 동·식물상의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군락의 종류 - 계절별로 출현하는 동·식물의 종류 등 군락별 구체적인 특성 ○ 매립요청지 안의 해양생물의 종류·서식지의 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헌 또는 현황조사에 의한 개략적인 자료를 제시 다) 물리학적 환경조사 : 매립요청지의 폐쇄성의 정도·해류 및 조류의 현황과 토사의 이동실태, 조수간만의 차이 및 해변 암초군의 분포실태 등 라) 이화학적 환경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요청지역 인근의 주요 오염원 및 오염원별 오염물질의 발생량 ○ 육역·하천 및 수역 등에 대한 환경기준 및 수질 등 매립요청지의 환경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문헌 또는 현황조사에 의한 개략적인 자료를 제출
3)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대책	가) 매립공사와 관련한 환경피해 저감대책 나) 매립 후 매립지안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다) 기타 환경상의 영향에 관한 저감대책

※ 비고 : 당해 매립사업의 위치·매립목적·규모 등을 감안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하되, 매립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함

다 매립예정지의 권리설정 제한

(법 제26조제3항·제4항, 영 제33조)

- 기 설정된 권리 : 제한하지 아니함
- 새로운 권리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 불가
 - 매립기본계획수립 당시 이미 공유수면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 매립기본계획수립 이후에 법 제32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라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해제(법 제27조제2항·제3항)

■ 변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종전에는 지정항만의 항만구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기본 계획변경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었으나 동 계획이 국가계획이므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과 해양환경·생태계보전 등 종합적인 해양행정 구현을 위해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폐지권한을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 하였음('98.8.11)

■ 변경시기 :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변경(반영)을 요청 받은 경우

-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 반영

■ 변경절차 : 매립기본계획의 수립과 같음

■ 검토사항 :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과 같음

■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법 제27조제1항)

○ 검토주기 : 5년

○ 조치사항 :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 매립목적의 변경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 매립기본계획 고시 후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봄
- 매립기본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관보에 고시
 - 매립예정지의 위치
 - 매립목적
 - 매립예정지의 면적
 - 해제 사유

3. 공유수면 매립면허

가 매립면허(법 제28조)

- **면허권자** :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등 면허관청
- **면허절차** : 환경영향평가·피해영향조사(신청자) → 면허신청(면허관청) → 관계 기관 협의 → 검토 → 면허처분 → 고시
- **매립면허신청(법 제28조제1항, 영 제34조, 규칙 제24조)**
 -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면허신청서에는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해당 매립목적을 명시
 - 신청서류
 - 신청서(다음 표 안의 매립목적중 해당 매립목적 명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함)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외)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만 해당)
 -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결과)를 제출토록 변경되었음
- 신청구역 및 인근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 매립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별표4 IV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표 참조)이 조사한 것이어야 함

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 국치길 38	2010.4.1~ 2015.3.31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88(미룡동)	2010.4.1~ 2015.3.31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88(미룡동)	2010.4.1~ 2015.3.3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2010.4.1~ 2015.3.31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2010.4.1~ 2015.3.31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2010.4.1~ 2015.3.31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둔덕동)	2010.4.1~ 2015.3.31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용현동)	2011.11.5~ 2016.11.4
제주대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5길 19-5	2010.4.1~ 2015.3.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상암동)	2008.2.12~ 2013.2.11

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사동)	2010.4.1~ 2015.3.31
한국해양대학 해양과학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2010.4.1~ 2015.3.31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2010.5.18~ 2015.5.17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2011.10.1~ 2016.9.30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지조사서 작성

- 면허관청은 면허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함
 - 신청구역의 상세한 주변상황
 - 매립이 항로·공유수면관리 및 수산업 등에 미칠 영향
 - 기타 매립으로 인한 일반적 영향
 - 신청구역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구역에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자 및 권리의 종류
 -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종류 및 소유자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지목·면적·종류 및 그 관리청
 - 기타 매립면허상의 참고사항

■ 매립면허신청서의 반려(규정 제32조)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 신청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매립기본계획의 목적·위치·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인 경우
 - 이미 면허신청서가 반려되었던 지역으로서 그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 관계기관이 매립면허의 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매립면허의 범위(법 제28조)

-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범위내(면적·용도 등)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함(법 제28조제5항)

■ 국가 등의 매립우선지역(법 제28조제7항, 영 제36조)

-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지자체만 매립할 수 있음
- 단, 다음의 경우는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인도 매립할 수 있음(영 제35조)
 -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 공장용지 : 23만㎡이하
 - 물류단지·가공시설 용지 : 16만5천㎡이하
 - 주택시설용지 또는 그 밖의 시설용지 : 10만㎡이하
 -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 국가·지자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의 지정 등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 협의(법 제28조제4항, 규정 제27조)**

-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농·축산업용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상·공업,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경관·생태계 및 수질 등 환경영향 등과 관련된 사항 : 환경부장관
 -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해운·항만, 어항계획 및 염전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약과 관련된 사항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 문화재보호·관리와 관련된 사항 : 문화재청장
 -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된 사항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 매립목적의 내용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법률과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 **면허의 기준(법 제30조, 영 제38조)**

-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음
 -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 및 생

- 태계의 변화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매립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방 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이라 함은 매립예정구역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 중 다음의 구역을 말함(영 제39조).
- 매립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그 권리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함(영 제39조).
-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법 제31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 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5항, 영 제34조제2항, 규칙 제24조)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매립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의견 이행 여부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 매립면허신청 시 제출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함
-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의 상호 부합여부
 -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여부(사업상 법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한 법인 모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
 - 사업계획서상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여부
 - ※ 면허 신청인의 사업계획상 계획된 실수요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바다·바닷가 등 당해 공유수면의 형상, 당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개발 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매립기본계획 상의 면적보다 증가는 불가)에서 면허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감할 수 있음
-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함
- 공사기간은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투입장비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시설물의 축조는 매립목적 및 위치에 따라 항만시설물 설계기준, 농지개량 사업계획 설계기준(해면간척편) 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계(업무처리규정 별표 5)

〈 호 안 〉

- 현지의 여건에 적합한 영구적인 구조물로 축조하여야 함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설치된 인접토지의 표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매립공사는 호안공(외곽공)을 먼저 시행하여야 함
- 침단에는 두께 0.2미터, 폭 0.6미터 이상의 침단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침단 콘크리트는 필요에 따라 반파구조로 함
- 선박의 계선을 필요로 하는 호안에는 15미터 내지 30미터의 간격으로 계선주를 설치하여야 함

〈 방 조 제 〉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상부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파제벽을 설치하여야 함
- 구조는 해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고, 지반의 침하나 파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함

〈 물 양 장 〉

- 구조물형식은 사면식, 계단식 및 직립식 중에서 이용도와 유지·보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름
 - ① 사면식은 사면비탈이 1:4보다 급하여서는 아니됨
 - ② 계단식의 1계단 치수의 높이는 1.2미터, 폭은 0.35미터 내외로 함
 - ③ 직립식의 경사는 1 : 0.3범위 내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충재를 설치하여야 함
- 계선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5미터 내지 20미터 이내로 함
- 후면에는 하치장 및 임항도로를 설치하되, 지정항만안의 하치장폭은 30미터 이상, 항만도로의 폭은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신청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하치장 및 항만도로의 폭을 조정할 수 있음
- 전면은 선박의 이·접안에 필요한 적정수심을 확보하여야 함

〈 도 로 〉

-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유효폭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매립지내의 도

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만,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신청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음

- 옆도랑을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매립(간척제외) 〉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목적에 감안하여 공유수면의 매립 후 주택·상가·공장 기타 건축물의 설치가 계획된 매립의 경우에는 매립지 조성 후의 지반침하 등의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당해 지역에 적합한 연약지반처리 공법을 선택·적용하여 매립하여야 함. 다만, 신청지역의 지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약지반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매립지반은 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성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표층을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복토의 두께는 0.2미터 이상이어야 함
-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토사는 산토 및 준설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준설토 기타 매립지반이 연약한 토사의 매립으로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하를 고려하여 매립표고를 결정하여야 함
- 성토표고는 호안표고이상이어야 하며, 매립부지내에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경사를 두어야 하되 다만, 성토표고는 매립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호안 및 물양장 등의 배면을 준설토 등 연약한 토사로 매립할 경우에는 매립토가 유출되지 않도록 매트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위차가 큰 지역에서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강토 등으로 매트 보호시설을 하여야 함

〈 배수시설 〉

- 매립지 안의 배수시설은 매립지 인접지역의 집수구역과 배수량 및 매립지

안의 배수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와 단면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도로(해안도로, 강변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는 반드시 옆도랑을 설치하되 필요한 개소에 암거집수거 및 맨홀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기 타 〉

- 바다·바닷가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준면(해도의 “기본수준면”)을 사용하여야 함
 - 설계조위는 파랑, 너울, 부진동, 쓰나미(Tsunami : 해일), 천문조(조석) 및 기존의 최고만조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하천과 바다가 합류하는 하구지역은 충분한 조사와 매립으로 인한 주변 조위의 상승고 및 배후지역의 배수처리의 지장여부 등을 포함한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질조사와 시험을 거쳐야 함
 - 매립에 소요되는 토량에 상당하는 이용 가능한 토취장등이 확보되어야 함
-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 검토를 한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함(기술검토서 첨부)

기 술 검 토 서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주소				
④ 매립위치					
⑤ 매립면적		㎡	⑥ 매립목적		
검 토 사 항					검 토 의 견
1. 항만계획 및 기타 국가계획 저촉여부					
2. 도면검토 가. 매립면허의 신청인이 제출한 구적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도면이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 나. 위치도는 축척 25,000분의 1 지형도에 신청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					
3. 신청위치 및 인접지역의 개략적인 해저지질현황(검토자가 조사·기술하여야 함)					
4. 신청면적 : 가. 면적산출의 정확성 여부 나. 신청인의 사업계획상 실수요면적 다. 바닷가 또는 기존 매립지 포함여부					
5. 호안, 물양장, 안벽, 도로 등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6. 해안도로와 기존 도로(국도, 지방도 등)의 연계여부와 그 대책					
7. 공사기간은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검토결과 공사기간 월
8. 공사비는 영 제51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였는지 여부					검토결과 공사비 천원
9. 도근점 설치소요 개수					개
10. 기타 매립면허시의 참고사항					
검 토 일	년 월 일	검 토 자 직·성명		확 인 자 직·성명	

■ 매립면허의 부관(법 제29조, 영 제37조, 규정 제33조)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다음 사항을 부관으로 붙일 수 있음
 -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 국·공유지의 양여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자체에의 귀속 및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 면허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2개이상의 도근점 및 매립표고를 수시로 검측할 수 있는 기본수준면의 기준수준점 설치에 관한 사항
 - 법 제34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매립면허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지방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면허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금액(조성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 법 제4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인(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규정 설계도서의 작성 및 감리, 규정 설계자문 또는 설계심의 책임감리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정 제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협의 의견,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매립면허의 고시(법 제33조, 영 제42조)

-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매립목적
- 매립위치와 매립면적
- 매립공사의 기간
- ☞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는 그 공유수면에 대하여 피면허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 등 다른 권리를 새로이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면허수수료(법 제34조, 영 제43조·제44조, 규칙 제25조)

-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 가격을 말함
 -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함
 - 매립면허수수료는 매립면허일을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한 인접토지의 가격에 다음표의 등급기분에 따른 기본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등급	등급 내용	요율
1등급	1.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이하 이 표에서 "무역항"이라 한다) 중 경인항·부산항·인천	인접한 토지가가격의 1천분의 15

등급	등급 내용	요율
	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등급	1. 특별시·광역시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
3등급	1.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5
4등급	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3

- 비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매립면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법 제34조 단서)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시행하는 매립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시행하는 매립

-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매립면허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귀속됨(영 제43조제3항)
 -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
 -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해당 시·군·구의 수입
 - 그 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

나 매립협의 또는 승인

■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법 제35조, 영 제45조)

- 국가나 지자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
-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준공 검사를 받기 전에는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
-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지목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매립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와 바닷가에 상당한 면적을 제외한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 국가 등의 공매립의 경우 총사업비 정산을 통해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개인의 매립면허와는 달리 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법 제36조, 영 제46조)

- 국가나 지자체가 다음과 같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매립할 수 있음
 - 해안도로(양식장 진입로 포함) 건설
 -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설
 -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 재해 복구 및 예방 사업
 - 연안정비사업
- 이 경우 면허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음
-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은 사업시행연도에 관계없이 인접한 지역에서 매립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 정부사업 매립지의 이관(법 제37조, 영 제47조)

- 면허관청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매립지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함
 -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 있어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조성된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인계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서·매립지에 대한 지

적공부등본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함.

- 매립지의 소재지
- 매립목적
- 착수 및 준공연월일
- 매립면적(m²)
- 총공사비
-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다 손실보상(법 제32조·제57조, 영 제40조·제71조, 규칙 제8조)

■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에 대한 손실보상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함(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
-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함
 -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그 시설설치의 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일 때에는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을 방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아직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함
 - ☞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와 그가 설치한 시설 등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토지 등예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예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에 따른 재결신청

-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손실발생의 내용
 -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 협의의 경위
 -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재결과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

라 매립면허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법 제43조)

■ 권리·의무의 이전·승계

-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함

■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승계) 신고

-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시에는 규칙 별치 제24호 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 신고서를 제출
-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됨

■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승계) 신고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함
 - 권리의 양수 :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양도·양수계약서
 - 권리·의무의 승계 :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을 증빙하는 서류
-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양수 또는 승계한 자는 공유수면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 봄

4. 공유수면 매립공사

가 실시계획승인(법 제38조, 영 제48조, 규칙 제29조)

- **승인권자** :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등 면허관청
- **승인절차** : 권리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피면허자) → 승인신청(면허일부부터 1년 이내) → 검토(설계도서 등) → 관계기관 협의 → 승인처분 → 고시
-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
 - 매립면허(승인)를 받은 자는 면허(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음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면허(승인)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 면허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포함,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자가 손실보상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공사설명서(매립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 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면허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 참고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은 당초 면허일부터 6월이내로 하다가 '99. 1. 1부터 1년 6월 이내로 연장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99. 8. 9부터 6월 이내로 변경하였고, 그 후 '07.12.27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하여 시행 중임
- ☞ 첨부서류 중 매립공사설명서·실시설계도서·예정공정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설계 등 용역업자(농업·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함

■ 실시설계도서의 검토(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

- 피면허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실시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호에 따른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그 설계감리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총공사비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매립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문을 받고 그 자문결과가 실시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안 공유수면 :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 바다·바닷가에서 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및 하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 당해 면허관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 위 사항 외의 공유수면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면허관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 관계기관 협의

- 면허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타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승인 시 검토사항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매립면허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면적의 적정성
 -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함)
 -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에 적합한지 여부
- ☞ 면허관청은 규칙 제2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고 매립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받은 매립예정지를 2개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승인 가능

■ 매립공사 감리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총공사비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총공사비 200억원이상 공사)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매립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
 - 위 사항 외의 매립공사에 대하여는 면허관청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감리 또는 감독업무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되,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 또는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책임감리의 시행대상인 매립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와 매립공사 착수전에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감리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 다만,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이거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제3호(농어촌진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시행공사)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외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일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까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1항(책임감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함
 - 항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구역,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 : 해양수산부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위 외의 구역 : 해당 매립면허관청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준용

■ 실시계획 변경승인(법 제38조제1항 후단, 영 제48조제4항, 규칙 제29조제3항·제4항전단)

- 변경승인 신청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승인신청서
 - 실시계획변경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 한함)
 - ※ 책임감리 등을 시행하는 자가 작성·검토한 것을 제출
 - 변경된 예정공정표
- 변경승인의 범위 : 면허관청은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매립구역의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여야 함. 변경승인 시에도 최초 승인 시와 같이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변경승인 시 검토사항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 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실시계획에서 정한 매립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의 적정성
 - 영 제51조제4항제5호 라목의 후단 및 동조동항 제6호 후단(공사비 상승액 및 건설이자 산입 제외)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여부
 - ☞ 면허관청은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의 검토결과, 매립공사의 준공기간 연장 등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영 제51조제4항제5호 라목의 후단 및 동조동항제6호 후단의 규정이 적용됨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인가 연월일(변경인가의 경우에는 변경인가 연월일을 포함)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매립목적

- 매립공사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
-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함)

■ 인가·허가 등의 의제(법 제39조)

-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논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

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 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신고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 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사 또는 신고
-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향로표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향로표지의 설치허가
-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나 매립공사(법 제40조)

■ 토지 등에서의 출입(법 제41조)

-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 토지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불용 국·공유지의 양여 (법 제42조)

- 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제방·구거·저수지 기타의 공용 또는 공공시설(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 포함)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이를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음
 - 양여 :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갈음하여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로 되는 도로·제방·구거·저수지·기타 공용 또는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여
 - 매각 : 양여에 해당하는 이외의 경우 매각
-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음

다 준공 전 매립지사용 및 준공검사

(법 제44조·제45조, 영 제50조, 규칙 제32조, 규정 제42조)

■ 준공 전 매립지 사용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전까지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매립지에 인공구조물 설치가 가능함

■ 준공검사 신청

-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매립지의 위치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정하여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지자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
 -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
 - 증빙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
-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정한 때에는 구역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영 제50조제1항 단서)

■ 준공검사 시행

- 면허관청이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책임감리대상 사업의 준공검사 신청 시 준공조서와 총사업비 정산서류를 해당 책임감리자 및 그가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연대하여 검토·확인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공사감독을 시행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정산서류를 해당 공사감독자와 면허관청이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 확인함
- 매립지(토지)와 공유수면의 지적경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호안(특수용 사로 등은 제외) 또는 안벽의 윗부분의 끝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그은 선 안의 토지를 매립지로 하고, 선 밖에 있는 호안·안벽 등은 인공구조물로 함(규정 제42조제3항)
- 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
 -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기준

(법 제46조, 영 제51조, 규정 제43조·제44조)

- 국가·지자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 국가 또는 지자체**
 - *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배수시설·공원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 용에 필요한 매립지 등을 말함
 - ** 국가의 시설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귀속, 지자체의 시설로 필요한 매립지는 지자체 귀속
 -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 : 국가
 - 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함
 - 국가가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귀속한 매립지 및 면적을 제외한 매립지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 : 매립면허취득자
 - 국가·지자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잔여매립지) : 국가

나 총사업비 산정

■ 총사업비 산정 방법

-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및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

■ 사업비목별 산정 방법

- 조사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
- 설계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든 비용. 이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
- 순공사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라 계산
- 보상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든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 부대비 : 다음 비용의 합계액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시공감리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른 보험료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액

- 이 경우 공사비 상승액은 영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영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 공정별 건설이자 : 조사비부터 부대비의 비용합계액에 대하여 면허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적용)
 - 이 경우 건설이자는 영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 조사비부터 부대비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총사업비 산정시 고려사항(규정 제43조)

- 총사업비 산정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함(규정 제43조)
-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실시계획 변경 시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함
- 순공사비의 비목 중 노무비의 간접노무비율, 경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기초로 함
- 공유수면매립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

업비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함)는 총사업비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매립세액)는 총사업비에서 제외

- 면허관청이 매립면허 부관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인정한 것. 다만,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험 및 다른 방식으로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등은 산입하지 아니함
-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

다 매립지의 가격 산정

■ 매립지의 가격 산정 방법

-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다음에 의하여 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면허관청은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매립지의 가격은 재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매립지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 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할 매립지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이상 공고한 후 지정신청자중

- 추첨에 의하여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여야 함
- 이 경우 면허관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협회에 공고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면허관청이 감정평가업자 지정을 위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 감정평가업자 추첨 일시 및 장소
 - 지정 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
 -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 제출서류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
 - 기타 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면허관청은 위 사항의 공고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이 하인 경우에는 5일이상 재공고하여야 함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면허관청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면허관청이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잔여매립지의 매수 청구

■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기한

-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함

■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

-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함
 -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국가 귀속 (잔여)매립지의 임대

- 국가는 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 ☞ 다만, 잔여매립지가 매수청구기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 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가 귀속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방법·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함
 - 임대방법 :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 임대기간 :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 임대료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법 제48조, 영 제55조)

■ 매립목적 변경 제한 등기

-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가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 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유권행사(매립목적) 제한사항을 적어야 함
 - ☞ 이 매립지는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 (년 월 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면허관청은 국가, 지자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준공 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면허관청은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함

■ 매립목적 변경 제한 기간

-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매립목적 변경 제한의 예외(법 제49조, 영 제56조·제57조, 규칙 제34조)

- 다음과 같은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미리 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용지만 해당)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간에 이를 상호 변경하는 경우
 - 영 제34조제2항의 후단에 따라 둘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목적을 상호변경하는 경우
 - 매립면허당시 법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
 -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 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 매립목적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면허관청은 변경하고자 하는 매립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한 매립지가액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매립지 중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음
 - 제세공과금 : 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공과금 또는 부담금
 - 감정평가비 : 매립지의 재평가에 든 감정평가비
 - 자본비 :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에 따르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년도까지의 기간으로 함

- 그 밖의 비용 :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 영 제51조제2항·제3항을 준용

○ 면허관청은 매립목적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 매립목적 변경 승인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매립목적 변경 승인 연월일

- 매립목적 변경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변경 전의 매립목적

- 변경 후의 매립목적

-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필지 및 면적

- 매립목적의 변경 사유

○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매립목적변경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취득

○ 국가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면허관청은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6항을 준용함

■ 매립지 사용의 확인(법 제51조, 영 제60조, 규칙 제36조)

- 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출입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면허관청은 위 확인결과를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가 공익 확보 등을 위한 조치(법 제52조, 영 제61조)

■ 매립면허의 취소 등

- 면허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매립 공정이 예정공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 매립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미만인 경우
 -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매립면허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제2항(목적변경)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자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허관청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 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 보상(법 제57조, 영 제71조)

- 면허관청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면허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함

나 매립면허의 효력상실(법 제53조, 영 제6조, 규칙 제38조)

■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함.
 - 매립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매립면허의 회복

- 매립면허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음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 미준공으로 인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음
-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예정 공정표
 - 매립공사의 공정이 영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음

다 원상회복

(법 제54조, 영 제64조부터 제68조, 규칙 제39조·제40조)

■ 원상회복 의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면허관청은 원

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 매립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 행정대집행

- 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원상회복 의무면제

- 면허관청은 다음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로부터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알려야 함

■ 시설물 등의 국가 귀속

- 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매립공사 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음
- 해당 매립공사 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등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치·수량·귀속시기 기타의 필요한 사항을 당해시설 기타 물

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함

- 국가는 귀속된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 ※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하지 않거나 의무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가귀속, 매각, 임대 규정 준용

■ 원상회복 의무이행 보증

- 면허관청은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영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지자체·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 의무이행보증금은 현금의 납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이행 보증금의 반환

- 면허관청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

-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서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함

라 보고·검사 및 청문(법 제56조· 제58조, 영 제70조)

■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출입·검사 및 질문

- 면허관청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사업장·매립예정지·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청문

- 면허관청은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매립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 효력 상실 및 원상회복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마 법령 위반지에 대한 조치(법 제62조·제65조)

▣ 벌칙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2조)
 -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 기타의 처분을 받은 자
 - 10년 이내 매립목적용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3조)
 -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자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 매립목적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목적용을 변경하여 매립지나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태료(법 제66조, 영 제75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허관청이 부과·징수하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100만원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500만원
3.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100만원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300만원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300만원
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1호	300만원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청이 청문대상 외에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IV

공유수면 관련 질의회신

1. 공유수면 관리 ○
2. 공유수면 매립 ○
3. 법령해석 ○

1. 공유수면 관리



가 공유수면에서의 적용법률 및 공유수면의 정의·범위

1-1.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유수면에서 먼저 적용할 법률 (연안 58160-75, '99. 2.18)

가) 질의요지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유수면인 바닷가(빈지)에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과 도시공원법중 우선 적용 하여야 할 법률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관리법과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거 각각 우선순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별개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양 법률에 의한 점·사용허가과정을 살펴보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합리적임

다) 이유

- 바닷가(빈지)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보전·이용의 대상으로, 자연공원법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공원의 설치대상으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점·사용허가전에 다른기관과의 협의 및 권리자의 동의여부, 허가조건 등에 대하여 각기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양 법률에서 각기 상대법률의 점용허가등에 대하여 상호관계와 우선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도시계획과 관

련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후부터 도시계획관련 점용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2. 공유수면(바다)에서 매립 및 지반개량용 토석·모래채취시 적용법률 (연안 58160-371, '99. 8.13)

가) 질의요지

○○○ 항만개발에 따른 매립 및 지반개량용 토석 및 모래를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없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만으로 채취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 항만개발사업에 따른 매립 및 지반개량용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게 됨

※ 공유수면에서 매립 및 지반개량용 바다모래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또는 사용허가로 가능한지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건설교통부 기재 58000-442, '99. 7. 30) : 골재채취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골재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 지상, 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쇄석용 암석, 모래,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함. 같은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따라서, 귀 질의사항

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 ※ 공유수면에서 뿔과 모래등이 혼합된 토사를 준설·채취하여 선별·세척하지 아니하고 ○○ 건설 매립 및 성토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일반토사 채취의 경우에 반드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건설교통부 기재 58000-504, '99. 9. 2) : 골재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 지상, 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쇄석용 암석, 모래,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함. 토사를 선별·세척하여 골재를 생산하지 아니하고 매립 및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골재로 볼수 없을 것임. 따라서 골재가 아닌 일반토사를 채취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봄. 다만, 토사를 선별·세척·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봄

1-3. 유실된 사유지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연안 58160-603, 1999.11.19)

가) 질의요지

바다에 유실된 사유지에 낚시용 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바다에 유실된 토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해당되므로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되며
- 위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낚시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료의 부과·징수대상임. 다만, 점·사용허가여부는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하며, 낚시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수산업법 등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

1-4. 사유토지로 물이 흐르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여부 (연안58160-50, 2000. 1.21)

가) 질의요지

기존의 구거가 자연현상 등에 의하여 변경되어 사유토지로 물이 흐르는 경우 동 사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바닷가 및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구거가 자연현상 등에 의하여 국유가 아닌 사유토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1-5. 공유수면관리법상 포락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안 58160-178, 2000.3.7)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에 접한 개인 소유토지(지목:임야)가 만조시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한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상 포락지에 해당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에 잠긴토지를 말하므로 공유수면에 접한 개인 소유토지가 만조시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한다면 공유수면관리법상 포락지로 볼 수 없다고 봄
- 그러나, 포락지가 아니더라도 공유수면에 접한 사유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1-6.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연안58160-196, 2000. 3.13)

가) 질의요지

- 1) 바다모래 운반선을 해안(바다)에 접안시켜 사유토지의 모래하치장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2) 부선을 해안(부선)에 고정시킨 후 동 부선에서 모래를 운반선으로 사유토지의 모래하치장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부선을 앵카체인 등으로 해안에 일정기간 고정시킨 경우 부선이 점용하는 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중 당해 부선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모래운반선이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용하여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수면을 자유롭게 점·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고 동 하역작업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에 모래 등이 흘러내려 수심 및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1-7. 광업법 및 골재채취법과 공유수면관리법과의 관계

가) 질의요지

- 1) 광업법에 의한 규사채취인가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부산물(모래 등)을 채취·판매하는 경우 위법여부
- 2)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광물(규사)을 채취·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허가의 타당성 여부

나) 회신내용

- 1) 광업법에 의한 규사의 채광인가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공유수면관리법령에서 규사의 부산물의 채취·판매에 대하여 따로 정하니 아니하고 있으므로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함
- 2)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골재의 채취장소가 바다 등 공유수면인 경우 별도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골재채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의제받아야 바다 등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으며, 채취하고자 하는 골재가 규사인지 여부와 규사채취시 부산물 등 판매여부 등은 광업법 및 골재채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함

1-8. 공유수면내 온배수 저감시설 축조시 적용법률(연안58160-682, 2000. 8.1)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에 사석, 피복석, TTP를 인위적을 투입하여 방파제성격의 방류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시설물이 토지의 조성행위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중 어떤 법률

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함
-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을 토지로 조성하고 피면허인이 총사업비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 토지를 야적장, 주차장 등 토지의 원상태로 활용하거나 이 토지위의 건축물, 구축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해안도로, 물양장, 안벽 등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이는 해안가를 따라 공유수면이 상실되어 토지조성이 수반되고 원상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영구적인 구조물이어야 할 것이며, 배후에 토지조성 없이 순수히 방파제, 돌제 등의 시설과 같이 바다쪽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 자체보다는 공작물 설치가 주목적이므로 매립법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본건 온배수 저감시설은 공유수면에 방파제 성격인 방류제를 설치하여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영향범위가 인근 연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해로 유도하기 위한 구조물이고, 동 공작물이 준영구(40년)라 할 지라도 원상회복이 전제된 경우라면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 시설물 축조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보다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을 축조하여 존치기간동안 피허가자 소유로 하되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및 유지보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유수면관리·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함
- 따라서, 귀 질의대상 구조물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작물 전체 바닥면적 규모가 1천㎡ 이상이라 할 지라도 순수히 구조물만 축조하고 토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구조물이 발전소 가동수명이 종료된 후 철거하여 원상회복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영광군)의 허가를 받아 축조해

야 할 시설로 판단됨

- 한편, 본 구조물 설치로 인해 해수순환 방향 왜곡과 주변연안의 침식 또는 퇴적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정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배제 및 의제

1-9. 수산업법령상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연안 58160-672,1999.12.10)

가) 질의요지

어업권자인 ○○어촌계가 어장환경회복을 위하여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래(규사)를 준설하고자 광업권자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준설가능한 지

나) 회신내용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도록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장환경회복의 목적으로 모래(규사)를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점·사용허가 없이 어업권자는 동 어장준설에 따른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어장 등에서 채취한 토사(규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필요한 공유수면점·사용행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별도로 광업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함

1-10. 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범위 (연안58160-680, '99.12.10)

가) 질의요지

- 1) 어항구역안의 수면(백사장 포함)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법률
- 2)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역시설의 범위

나) 회신내용

- 1)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항시설이 아닌 수면(백사장 포함)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대상임
- 2) 항시설중 수역시설은 어항구역안에서 선박의 출입과 정박이 가능한 수면을 말함. 다만, 어항구역안이라 하더라도 어항시설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항로 또는 정박지로서 이용이 곤란한 지역(예:외곽시설내측의 육지와 접한 바닷가, 외곽시설외측의 항로를 제외한 해안지역 등)인 경우에는 수역시설로 볼 수 없음

1-11. 수산업법상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연안 58160-51, 2000.1.21)

가)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축제식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구역안에서 동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목적으로 물양장·어구적치장·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대상인지 여부 및 점·사용료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자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됨
-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당해 어업에 필요한 시설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물양장·어구적치장·작업장 등이 동 어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행정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이 경우 공유수면점·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됨

다 공유수면의 관리(관리청)

1-12. 공유수면점용거리(면적) 등에 관한 질의(연안 58160-231, '99. 6.3)

가) 질의요지

두 지점간의 공유수면(바다)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이 점용하는 공유수면(바다)에 대하여 두 지점을 각각 관할하는 공유수면관리청별 점·사용허가 범위(구간 또는 거리)와 광케이블의 공유수면 점용면적 산정방안

나) 회신내용

두 지점간(남해-제주)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이 차지하는 점용면적(설계도서 등에 의거 광케이블과 동케이블 보호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해저면적과 동시설로 인하여 타인의 점·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면적)에 대하여 두지점의 공유수면관리청과 광케이블이 통과하는 공유수면관리청이 협의하여 점·사용허가 면적

(예시 : 총길이를 1/2로 산정 등)을 결정하고 점·사용료(직접점용료와 간접점용료)를 부과하여야함

다) 이유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은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의 범위까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관리청별 관리해역(바다)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관리청간에 협의가 필요함

1-13. 공유수면관리법상 관리청의 범위(연안58160-256, 2000. 3.25)

가) 질의요지

감천항 외항(무역항 항만구역 밖)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영해내측에 투기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점·사용허가권을 가진 관리청은 채취장소를 기준으로 하는지 투기장소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까지로서, 동 공유수면의 관리권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영해중 무역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은 지방해양수산청장,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부산남항은 부산광역시)에게 위임되어 있음
- 항로준설 등 토석채취를 하여 공유수면에 투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해역 및 투기장소가 각각 다를 경우 동 해역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각각 따로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한편,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별 관할범위는 공유수면관리법령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점·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관련사항

1-14.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에 따른 오탁방지막설치시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연안 58160-88, '98. 3.11)

가) 질의요지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준설공사 등)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탁방지막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동 실시계획승인외에 별도의 공유 수면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국가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내역에 오탁방지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점용허가는 불필요하며, 공유수면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 이 유

- 항만법 제11조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시행 또는 허가에 관한 고시를 한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함
- 국가귀속항만시설에 대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는 국가부담하에 시행하는 공

사와 같으므로 공유수면점·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오락방지막은 준설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필수시설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도 설치)로서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유수면점용료 전액 면제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행위자체는 영리행위가 아닌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공사로 볼 수 있으며
- 해양수산부고시(’96-26호)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관한규정 제22조제4항 제4호 및 별표1의 사”에서도 국가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경우는 수역이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 비관리청에게 오락방지막 설치면적에 대한 공유수면점용료 등을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관리청에 보전하게 되는 총사업비가 늘어나고 무상사용기간이 연장되므로 이를 별도로 부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1-15. 공유수면(구거)점용허가 관련질의(연안 58160-204, ’98. 6.9)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갑”이 무단으로 구거부지를 점용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갑”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실제로는 “을”이 동 구거를 무단점용하고 있으므로 “갑”의 허가를 취소하고 “을”에게 재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갑”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이를 취소하고 “을”의 신청에 따라 “을”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다만, “갑”에 대한 취소사유 및 “을”에 대한 허가여부는 당해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할 사항임

1-16. 공유수면(구거)점·사용 허가 가능여부(연안 58160-275, '99. 6.23)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구거)에 흡관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활용코자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국유인 구거는 공유수면으로서 일정기간 사용후 원상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흡관 등을 설치하여 진입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대상임. 다만, 허가여부는 구거의 규모, 형상, 홍수시 수해 피해여부 및 관계기관(권리자)의 협의(동의)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구거) 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17. 공유수면점·사용허가관련 질의(연안 58160-356, '99. 8.3)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부잔교 등)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공유수면에 설치된 부잔교 등의 사용동의를 얻은 자를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동의만을 얻은 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음

다) 이 유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아 공작물을 설치한 자의 공작물의 설치목적 및 용도 등이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그 동의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의 점·사용이 가능하나

- 당해 공유수면의 점·사용 동의행위만으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1- 18.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점·사용허용 범위 (연안 58160-466, 1999.9.28)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신청한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받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단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한 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매립면허전까지 공유수면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1-19. 개인소유토지인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고자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점·사용 허가대상 여부(연안 58160-480,1999.10.4)

가)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임야(사유지)이나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방을 설치하는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포락지 또는 간석지의 토지를 위하여 제방시설이 지적공부상 사유의 토지 또는 임야의 지적선안에 설치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공유 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제방시설이 지적선 밖 공유수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1-20. 지적공부상 도로 등이나 사실상 구거로 이용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법상 점·사용허가대상인지 여부(연안 58160-496, 1999.10.12)

가)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도로 및 담이나 구거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할 때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대상인지 여부 및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인·허가 절차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바닷가 및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공부상 국유의 구거로 되어 있지 않은 구거는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인·허가절차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당해 재산관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1-21. 국유인 구거의 점·사용행위(연안58160-674, '99.12.10)

가) 질의요지

- 1) 국유인 구거의 유료가 변경되어 개인 소유의 토지로 물이 흐르고 당초 구거를 타인에게 점·사용허가한 경우 허가취소 가능여부 및 허가취소 후 현행 구거 토지소유자 부담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
- 2) 구거를 인근토지의 진입도로 목적으로 점·사용허가가 가능한 지

나) 회신내용

-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및 점·사용허가시 붙인 조건(부관)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안에서 검토·판단하게 되며,
 - 당초 구거부지를 모두 점·사용허가한 경위·사유 등을 알 수 없으나 현재 구거로 이용되는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구거를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대상이 됨
- 2) 국유인 구거를 진입도로로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나, 허가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당해 구거의 원형보전의 필요성,특정인의 배타적 점·사용가능성, 공작물설치로 인한 수해 등 제반피해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점·사용허가여부를 판단함

1-22.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은 건축법 등에 의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연안 58160-51, 2000.1.21)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관리법상 다른 법률(건축법)의 의제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함

**1-23. 활어차 등에 해수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점·사용허가 대상여부
(연안58160-57, 2000. 1.21)**

가) 질의요지

해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활어차 등에 의하여 해수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대상 여부 및 그 절차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에 파이프 등을 설치하고 해수를 인수하여 상업목적으로 해수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동조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의 대상이며, 허가절차에 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령(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 제5조제3항·동법시행령 제6조 및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8조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함

1-24. 활어수족관 공급용으로 인·주수허가 받았으나 해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연안58160-92, 2000. 2. 2)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바다)에서 물을 끌어들이어 활어수족관에 공급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일정한 요금을 받고 다른 사람의 활어차 등에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닷물을 활어수족관에 공급할 목적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목적 및 내용(기간, 장소, 규모/면적 등)에 적합하도록 점·사용하여야 하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활어차 등에 해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이는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서로 다르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동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변경허가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시)이 주변 여건,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종합검토·판단할 사안임

1-25.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대상 인지(연안 58160-149, 2000.2.28)

가) 질의요지

축제식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축제식 양식어업에 있어서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라 함은 양식에 필요한 제방축조, 수문설치 및 최소한의 바닥굴착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구역에서 골재·토석·토사·자갈 등을 채취·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주변여건, 관계기관 협의의견, 권리자의 동의여부,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검토·판단할 사안임

1-26.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대상여부(연안58160-198, 2000. 3.13)

가) 질의요지

하천에서 무동력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급류를 타는 경우 하천법 또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일반하천의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대상이나 공유수면에서 무동력 보트를 이용하여 급류를 타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수면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1-27. 소규모어항에 설치된 선착장에 여객선 등이 기항하는 경우 점·사용허가 대상 여부(연안58160-265, 2000. 3.29)

가) 질의요지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이 어항법상 어항구역이 아닌 소규모 어항에 기항하기 위하여 "육지 소규모어항개발계획"에 의거 설치된 선착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어항법상 어항구역이 아닌 기타 어항(통상 “육지 소규모어항” 이라 칭함)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지 소규모어항개발계획에 의거 설치한 선착장, 물양장 시설 등은 어민편의를 제공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해 줄 경우 피허가자는 동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점·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동 시설물의 설치목적에 배치되어 점·사용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또한, 공유수면에 설치한 동 시설물은 설치시 매립을 수반하는 지 여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육지 소규모어항개발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는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어선 또는 여객선, 유·도선이 동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일정기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사용허가 대상이나, 허가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사용의 목적(용도), 시설물 규모, 주변여건, 관계기관 협의의견, 권리자의 동의여부 및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

1-28. 개인소유의 간석지도 공유수면 점사용 대상인지 여부 (연안계획과-1332, 2012. 6.15)

가) 질의요지

- 1)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경우 해수 인배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 위의 경우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인 경우, 통로상의 모든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1)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나 포락지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 2) 같은 법 제12조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해야 함

1-29. 허가받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 신규 설치 (연안계획과-2813, 2012.12.18)

가) 질의요지

- 1) 기 허가받은 공유수면에서 허가면적, 허가목적의 변경 없이 인공구조물 신규 설치 및 기존 인공구조물 보강공사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여부
- 2) 동 인공구조물 신규 설치 및 기존 인공구조물 보강공사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 여부

나) 회신내용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 여부도 결정할 사항임.

마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관련사항

1-30. 채광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질의 (연안 58160-69, '98. 2.24)

가) 질의요지

- 1)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2) 또는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허가의 절차없이 공유수면 점용료만 납부하여도 되는지?
- 3)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되는지?

나) 회신내용

- 1) 및 2)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면서 점·사용할 공유수면 면적, 점용기간 등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당해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였다면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로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채광계획인가(변경인가)를 받은 공유수면점·사용면적과 기간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료만 납부하면 됨. 그러나 채광계획인가시 공유수면점·사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전에 공유수면점·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라 점·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3)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7조(특별관리해역안에서의 해역이용행위의 제한등) 또는 제10조(기타지역 해역이용협의)에 따라 허가 행위가 있기 전에 미리 해역이용협의를 이루어져야하며, 기

간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점·사용기간이 단 기간이고 허가조건 및 내용(점용면적 등)에 변동이 없으며,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등 특별히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당해 관리청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

1-31. 공유수면 연장허가처리의 적정여부 질의(연안 58160-91, '99. 2.27)

가) 질의요지

A가 공유수면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기간중에 그 공작물설치권에 대한 양도양수를 득하여 대표자를 A와 B로 변경한 상태에서 A가 단독으로 동 설치연장 허가 신청을 한 것을 관리청이 A와B에게 공동으로 연장허가처분을 한 경우의 연장허가처리의 적정여부 및 B에 대한 연장허가의 효력

나) 회신내용

A가 단독으로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A와B에게 연장허가한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며, B에 대한 연장허가처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봄. 다만, A에 대한 연장허가의 유효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다) 이 유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을 대표로 정하여(신청서에 명기)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아니한 B를 포함하여 연장허가를 한 것은 행정행위의 객체에 대한 명백한 잘못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며, 신청이 없는 B에 대하여 연장허가 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봄

1-32. 접안시설용으로 점·사용허가받은 구역에서 규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연안58160-147, 2000. 2. 8)

가) 질의요지

- 1) 선적시설 및 접안시설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구역(197,614 m²) 내의 일부구역(19,600m²)에서 수심확보를 위하여 규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2) 새로운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1) 공유수면관리법(1999. 8. 9 개정·시행된 공유수면관리법을 말함)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선적시설 및 접안시설 설치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중 일부구역에서 수심확보를 위하여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이미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점·사용목적에 추가하여 점·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함
 - 또한, 선박운항을 위한 수심확보(항로)를 위하여 규사를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 광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은 자 및 준설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준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2) 공유수면 점·사용목적(선적시설 및 접안시설, 규사채취)별로 점·사용의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1-33. 허가받은 시설외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점·사용허가 대상인지
(연안 58160-199, 2000.3.13)

가) 질의요지

해수인수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점·사용중에 있으나 추가로 배수 시설(파이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해수인수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해수인수용 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점·사용중에 있으나 추가로 배수시설(파이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점·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은 물론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바 허가의 기준 및 권리자의 범위

1-34. 광업권이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자인지 여부(연안 58160-48, '99. 1.28)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권리자의 동의서 범위에 광업권이 포함되는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시 동의서를 제출하는 권리자라 함은 당해 공유수면의 점·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는 자를 말하

므로 광업법령에 의해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자는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음

* 채광계획을 인가 전에 공유수면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가받은 채광계획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이 가능함

다) 이 유

광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은 광구내에서 “허가된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된 광물이 부존하는 공유수면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물권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만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며, 광업법 제47조제1항 및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를 의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의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35. 공유수면관리법령상 권리자(연안 58160-561, 1999.11.9)

가) 질의요지

- 1)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와 관련하여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의미
- 2)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인접”의 범위

나) 회신내용

- 1)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토지 또는 점유자를 동법제7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의 범위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은 인접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 2) 인접의 범위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 구역에 직접 접한 토지뿐만 아니라 당해 점·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이웃하는 토지까지 포함된다고 보지만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위치·목적·설치 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내용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1-36. 구거에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권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안 58160-587, 1999.11.15)

가) 질의요지

국유인 구거에 진입도로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거에 인접한 토지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함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구거)점·사용으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동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및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에 해당되므로 동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점·사용허가가 가능함

1-37.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 관련(연안58160-700, '99.12.16)

가) 질의요지

- 1) 공유수면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자의 범위

- 2) 권리자의 동의없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3)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시점)

나) 회신내용

- 1) 공유수면관리법령(이하 1999.8.9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상 권리자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동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어야 함을 의미함
- 2)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허가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동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를 허가기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동의없는 점·사용허가는 취소(무효)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인지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위치·목적·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

1-38. 공유수면관리법령상 권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안 58160-140, 2000.2.21)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령상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구역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권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현행 공유수면관리법령상 권리자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동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되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인지 여부는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 여건, 목적, 인접토지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 여부 등을 관리청이 종합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임

1-39. 공유수면(구거) 점·사용 권리자 범위(연안58160-154, 2000. 2.29)

가) 질의요지

- 1)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의 구체적 범위
- 2)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와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의 “권리자”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
- 3) 개인소유 토지 A,B중간에 있는 공유수면(구거)을 점·사용하고자 B토지 소유

자가 점·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인접토지소유자인 A(A는 무단으로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1) 및 2)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라 함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동 토지 등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령상 권리자인지 여부는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여건, 목적, 인접토지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리청에서 판단·결정할 사안임
- 3)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자(A)는 공유수면관리법령에 의한 권리자로서 볼 수 없으나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A는 위 “가”항의 권리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리자로 볼 수 있음

1-40.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 및 권리자 범위 (연안계획과-594, 2011.3.17)

가) 질의요지

- 1)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본문(법률상 최대 허가기간의 1/2이상 허가) 보다 단서 규정이 우선하는지 및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 또는 범위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보상금을 공탁받은 어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3)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상태에서 보상금이 공탁된 어업권을 양수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4) 피해보상 기준일(고시일 또는 합의일) 이후 신규로 면허된 어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5) 어민대표와 합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 제출로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6) 부관어업권자(원전 온배수로 인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제·개정 취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커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본 법령의 취지 상 본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단서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국방 또는 해상교통 안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2분의

- 1 이하로 점용·사용기간을 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그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야기될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보상을 하도록 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1987.4.14. 선고 85다카2313 판결)에 의하면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업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어업피해에 대한 변제의 효력으로 피해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탁받은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어업피해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이미 어업피해를 변제한 어업권을 그대로 양수받은 것이므로 양수인을 새로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로 보거나, 권리자로 인정하더라도 동의를 받는 것은 (질의 나.)의 답변내용과 같은 사유로 공탁을 통하여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4) 대법원 판례(2007.5.31. 선고 2005다44060 판결)에 의하면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및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어업자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새로 허가를 받은 어업(권)자는 그 공유수면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허가·신고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한을 전제로 하여 한 것으로 어업(권)자는 당시의 환경을 수인한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자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의 허가를 할 때 수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기관·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하 '전문기관 등'이라 함)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현 시점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판단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사실상 동의서 청구대상을 알 수 없으므로 어민대표와 합의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상계획의 공고를 거쳐 전문기관의 어업피해범위 및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면서 위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보상추진계획서를 동의서로 갈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6) 수산업법 제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적 하자 없는 부관으로 원전 6개호기 가동을 위한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 시 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어업허가를 하였다면 어업(권)자는 허가 당시의 어업환경을 수인한 것이므로 점용·사용허가기간 연장 시 (질의 라.)의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움

사 공유수면점·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감면

1-41. 공유수면을 허가없이 점·사용한 경우 점·사용료를 몇 년간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연안 58160-211, '98. 6.12)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을 점·사용하였을 경우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점·사용료를 5년간 소급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당초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은 허가없이 점·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점·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허가없이 점·사용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기간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를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69조제1항에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5년간 공유수면점·사용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90누 769판례, '90.22.21 선고)도 있음

1-42. 공유수면점·사용료 관련 질의(연안 58160-186, '99. 5.4)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점·사용허가(직·간접점용)을 받은 계류시설에 허가목적과 다르게 당해 시설을 사용하였을 경우 별개의 점안료 또는 정박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계류시설 및 공유수면(직·간접으로 점용) 면적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납부하였다면 당해 시설물을 당초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와 별개로 점안료 또는 정박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허가받은 시설물을 당초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관리청이 허가취소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1-4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관계기관과 협의(연안 58160-299, '99. 7.1)

가) 질의요지

○○군수가 해안선 출입시 군부대의 승인이 필요한 작전지역인 공유수면(바다)에 대하여 군부대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육상양식어업을 위한 해수인수 및 공작물 설치 허가('95.6.9)”함에 따라 군부대의 출입통제로 동 공유수면을 점·사용(공작물설치)하지 못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95.6.9~'98.10.9)만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군수가 군부대와 협의없이 허가한 행정행위의 하자에 기인된 것이므로 동 점·사용료는 환불 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나) 회신내용

환불함이 타당함

다) 이 유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다른 국가계획 등에 의거 당해 공유수면의 점·사용이 규제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법적, 현실적으로 점·사용이 가능한 경우 점·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기 위함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도시계획과 군사시설 및 해군기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의 관련기관을 명시한 것이므로 이와는 별개로 그외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이와관련,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및 해군기지법에 의한 기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군부대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의 판단만으로 협의를 생략할 수 없다고 봄
- 또한 점·사용허가한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군부대의 출입통제가 정당한 근거(해안출입통제규정 제14조)에 따라 이루어 졌으므로 그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점·사용이 법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한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는 찾을 수 없음
- 더욱이 이후 동일한 곳의 공유수면(바다)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하면서 군부대와 미리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점·사용허가를 한것으로 보아 당초의 점·사용허가시 군부대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필수적인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

1-44.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대상여부(연안58160-197, 2000. 3.13)

가) 질의요지

육상중요생산어업을 하는 경우에 해수인수를 위한 파이프설치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대상인지 여부와 점·사용료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수산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자(면허 또는 허가어업)는 당해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각종 행위가 허용되나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한 신고어업으로서 어업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육상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배수시설 등을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사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함
- 이 경우 공유수면점·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대상임

1-45.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료 감면대상(연안58160-231, 2000. 3.20)

가) 질의요지

법인 또는 단체가 수익사업목적으로 국가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자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사용료는 감면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사용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공유수면점·사용료는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시험을 대행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점·사용료 감면대상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동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근거 법령, 정관, 사업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인지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1-46. 공유수면점·사용허가기간 만료전 지적공부등록 가능여부 질의 (연안 58160-108, '98. 3.26)

가)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원상회복 조건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허가기간 연장중인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면제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중 지적공부상에 등록이 가능한 토지화된 토지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기간 연장중인 경우에도 국유재산(토지)으로 취득 및 지적공부등록이 가능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소재 거북섬 등이 그 사례임

다) 이 유

- 공유수면중 지적공부상에 등록이 가능한 토지화된 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령에서 점·사용허가기간중에 토지로 취득함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지적법 및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 및 등록이 가능하며,
- 터우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해 공유수면점·사용(연장)허가시 허가조건 제7호에서 토지로 신규등록할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동 조건 제2호에서 점·사용허가기간만료 이전이라도 “국유재산으로 취득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별도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조건을 부여하였음

1-47. 모래의 채취로 인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 (연안 58160-155, '99. 4.14)

가) 질의요지

모래채취를 위한 점·사용허가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에 이

미 채취한 모래에 상당하는 흙 등을 되메우는 등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이나 모래를 채취한 후 그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이미 채취한 토석이나 모래에 상당하는 흙 등을 되메워 원상회복할 대상이 아님

다) 이 유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원상회복은 공유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공작물 또는 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여 공유수면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공유수면상태를 유지하면서 토석 또는 모래를 채취한 경우는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것임. 다만, 토석이나 모래채취로 인하여 인접 제방·도로 등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수심이 너무 깊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미 채취한 토석이나 모래에 상당하는 흙등을 되메우게 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1-48.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받아 설치한 시설물과 다르게 시설물을 설치 한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연안 58160-431, 1999.9.8)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구거)에 암거(2.0×2.0×1련, L=46M)를 설치하여 진입도로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허가내용과 다르게 흙관(1500mm)을 설치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허가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시공 지시가 있는바, 홍수시 지장이 없으므로 흙관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공작물의 종류, 형태, 규모,

공유수면으로의 원상회복 가능성 및 홍수시 피해발생 여부와 관계기관의 협의의 견을 종합 검토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하게되며, 질의요지와 같이 당초 암거설치를 목적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흠관으로 대체하여 설치하였다면 공유수면점·사용의 범위와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대상을 벗어난 것임

1-49.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받은 공작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철거하여야 하는지 여부(연안 58160-506, 1999.10.19)

가) 질의요지

공작물(선박 접안시설)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점·사용허가 규모(면적)를 초과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그 초과시설물을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사항(기간, 목적, 장소, 규모/면적 등)에 적합하도록 점·사용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따라서, 공유수면상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그 다르게 설치한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사용에 해당되어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제2항의 대상이 됨과 아울러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조치와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됨
-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설치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당해 공유수면관리청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변경허가여부는 허가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사용허가신청 불가피성 여부, 시설물의 원상회복(철거) 및 재설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최소화 필요여부,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관계 기관 협의의견,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 여부 등을 공유수면관리청이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임

1-50.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 위반시 취소 가능여부 (연안 58160-640,1999.11.30)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시 타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등을 받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사용허가 취소가 가능한 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목적에 따라 점·사용하여야 하며, 점·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허가받은 목적(활어 및 수산물판매)을 벗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공유수면점·사용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허가받은 점·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취소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안에서 검토·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점·사용허가시 붙인 조건(부관)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취소(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당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무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정변

경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검토·처분할 수 있음

1-51. 공유수면내 점·사용허가없이 설치한 건축물 (연안58160-728, '99.12.27)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사후 점·사용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화된 공유수면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및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계획 등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검토될 수 있으나 허가없이 설치한 건축물은 점·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하게 됨. 또한 공유수면은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연공물이므로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매각 등의 처분대상이 아님

1-52. 공유수면내 점용·사용료 요율 적용(연안계획과-715, 2011.3.28)

가) 질의요지

- 구거를 점용한 건축물이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가 식당, 카페테리아, 창고 등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을 인공구조물로 판단하여

3%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므로 주거용으로 보고 0.5%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요율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허가 목적(점용·사용의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실제 용도가 허가 목적과 달리 사용될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후 점용·사용료 요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53. 조력발전소 점용·사용료 요율 적용(연안계획과-188, 2012.1.31)

가) 질의요지

- 1)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일 경우 점용·사용료 감면 대상 여부 및 점용·사용료 산정 방식

나) 회신내용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바닷물의 사용에 대해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개념이므로 인위적 인·배수 여부와 관계없이 조력발전의 경우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해당됨

- 2) 조력발전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점용·사용에 해당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점용·사용료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3.가 전기사업용수(m³/초당 연액 20만원)”를 적용함이 타당함

1-54. 사립학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연안계획과-1729, 2012.8.7)

가) 질의요지

- 사립학교 내 국유재산(지목:구거) 지하에 흡관 등을 부설하여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점용료 감면대상 여부1)미부과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소멸시효(5년)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운동장 등 육영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음

1-55. 비영리 공익법인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연안계획과-2218, 2012.9.28)

가) 질의요지

- 민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청권사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변상금 감면 및 원상회복 의무면제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단체 중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러나,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개별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여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변상금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 다만, 동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는 있음

1-56.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요율(연안계획과-2599, 2012.11.15)

가) 질의요지

- 차량 진출입로로 점용·사용 허가한 공유수면(구거)의 점용료·사용료 산정시 인공구조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요율(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타 요율(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잔교·호안·물양장·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며,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 가목에서 정한 목적 외

의 점용·사용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를 적용함

- 여기서 인공구조물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목적이 인공구조물 설치·사용을 위한 점용·사용인지 아니면 단순 점용·사용인지 여부를 판단·적용하여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1-57.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방식(연안계획과-2761, 2012.12.12)

가) 질의요지

- 1) 공유수면(하천부지) 내 일반음식점, 주택, 건강원 및 자동판매기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 2) 공유수면(하천부지) 내 불법 건축물의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향후 현 점유자가 지속적으로 사용 예정 시 점용·사용 허가 가능 여부 또는 용도폐지 후 매각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하천·구거 부지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상업용)로 복합 사용 시에는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공유수면(하천부지) 내 불법 건축물의 원상회복이 어렵고 향후 현 점

유자가 지속적으로 사용 예정 시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당 공유수면(하천부지)을 용도폐지 후 지목을 변경하여 국유재산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하여야함

2. 공유수면 매립



가 공유수면 매립에 있어서 적용법률

2-1. 유수지의 공유수면매립법 적용여부(연안 58161-227, '99. 5.31)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되고 지번·지목 등이 설정되어 있는 국유의 유수지의 일부분을 매립하여 공장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여야 함

다) 이 유

국유의 유수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유수지의 조성경위에 관계없이 구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에 해당하고,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2-2. 공유수면매립법 적용여부(연안계획과-2874, 2011.12.15)

가) 질의요지

○○군에서 2011. 5. 16. 구거(폭 12m, 높이 1.5m 정도)에 폭 1.2m, 높이

1.0m의 통수단면을 가진 U형 측구(연장 102m)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거 부지를 매립하여 진·출입로(콘크리트포장 폭 5m)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를 하였음.

- 1) 폭 12m 정도의 구거에 폭 1.2m의 U형 측구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거 부지를 매립하여 폭 5m의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등 도로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허가 대상 여부
- 2)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다면 처리 절차

나) 회신내용

1)질문“ 1)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임
-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구거(공유수면)를 도로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대상여부는 원상회복이 예정(전제)되었는지, 토지조성에 이르는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허가기간을 정하고 토지조성이 주목적이 아닌 인공구조물*로 원상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유수면 매립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로 조성되어 공유수면이 상실되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음

- * 인공구조물 :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을 말함
- 따라서 ○○군에 있는 구거(공유수면)를 흙, 모래 등을 투입하여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화된 도로부지로 조성한 것이라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 질문 “2)항”에 대하여
 - 본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 행위에 대한 하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나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실시계획인가

2-3. 토지이용계획 변경(연안계획과-2098, 2012.9.17)

가) 질의요지

-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승인 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도로(해안순환도로) 건설공사 중 당초 실시계획승인 계획노선에 도로부속시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도로의 노선을 지정(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 사항이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인지 또는 신규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농어촌도로(해안순환도로)”의 목적으로 매립공사 추진 중에 당초 매립실시계획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동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의 범위(매립목적, 매립면적 등)에서 “도로부속시설

주차장”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등에 대하여는 매립면허관청에서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다 불용 국·공유지의 양여

2-4. 공유수면매립면적 산정 및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연안 58161-227, '99. 5.31)

가) 질의요지

- 1)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시 지적공부상 국유(농림부)인 하천(지목)을 매립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2) 매립면적에 포함될 경우 공유수면매립준공후 토지의 소유권을 매립면허를 받은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1호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 나목에 의하여 지목상 국유인 하천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일 경우 매립면적에 포함할 수 있으나, 지목상 국유인 하천이라 하더라도 물에 잠기지 않고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가 아닐 경우에는 매립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
- 2) 질의와 관련, 지목상 하천이 매립면적에 포함되어 매립공사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갈음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동 하천의 국유재산관리청(농림부)에서 용도폐지 후 양여를 하겠다고 동의를 할 경우에만 피면허자에게 양여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2-5. 공유수면매립으로 불용되는 국유지의 양여(연안 58160-372, 2000. 5. 2)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기존의 시설에 대체하여 새로이 개설되는 공공시설인 해안도로와 호안은 국가소유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불용되는 기존의 국가소유 해안도로와 제방 등은 피면허자가 양여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호안·제방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귀속된 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제방 기타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될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시설에 갈음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당해 매립 피면허인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기존의 국가소유인 해안도로·제방 등 공공시설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고 이에 갈음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이 귀속되는 해안도로·제방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용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피면허자가 양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 질의하신 건의 경우 매립면허 조건상 새로이 설치하는 해안도로와 제방이 매립 피면허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이 개설되는 해안도로와 호안은 국가소유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불용되는 기존의 국가소유 해안도

로와 제방 등을 피면허자가 양여받기 위하여는” 면허청과 면허조건 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라 손실방지과 보상

2-6. 공유수면매립관련 어업권 등 보상기준시점(연안 58160-365, '98.10. 2)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일 현재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립공사 착수이전에 어업 면허의 유효기간 20년이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소멸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어업권 등 권리의 보상은 매립면허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상물건을 확정하여야 함

다) 이 유

구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를 매립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가진자의 여부는 매립면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립면허의 고시일 후에 설치한 공유수면의 이용에 관한 시설등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구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매립면허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보기 때문임

마 권리·의무의 승계

2-7.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인·허가사항의 법령적용 (연안 58160-201, '99. 5.13)

가) 질의요지

-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20,749천m²)은 환경관리공단이 '88. 2.20 동아건설(주)로부터 구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양수받아 매립공사를 시행중임
- 위 매립지가 '95. 1. 5 제정·공포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어 환경부장관이 위 매립공사의 실질적인 시행자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경우에 매립면 허받은 권리를 가진 자는 환경관리공단(동아건설로부터 권리양수자)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매립면허를 의제받았다고 주장)중 누구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면허관청인 농림부장관이 환경관리공단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한 권리·의무양수인가('88. 2.20)를 한 후에 면허관청이 다시 공유수면매립법령에 의거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동 매립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를 한 바가 없다면 환경관리공단이 동 매립면허(면적 : 20,749천m²)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갖는 것임

다) 이 유

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권리는 면허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인가를 받거나 요건을 갖추어 승계신고를 함으로써 승계되므로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지

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이미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수도권매립지에는 동 의제조항의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및 매립지의 사용

2-8. 공동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분할지분으로 준공인가필증 교부 가능여부 (연안 58163-153, '98. 4.29)

가)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매립의 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피면허자 전원이 합의하여 연서로 날인한 후 분할지분으로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 피면허자 각자의 개별지분으로 소유권을 표시하여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면허자가 취득할 수 있는 매립지를 피면허자 공동의 소유로 소유권을 표시하여 준공인가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매립면허의 목적과 매립에 관한 사업계획의 시행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용 또는 공공시설의 하자보수보증의 연대책임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면허자 각자의 개별지분으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표시한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할 수 있음

2-9. 공동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분할지분으로 준공인가필증 교부 가능여부 (연안 58163-153, '98. 4.29)

가) 질의요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준공인가 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1) 산업법 제37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매립면허 취득자)가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2) 산업법에 의한 ‘준공 인가전 사용승인’ 이전에 공유수면관리법 제44조에 따른 매립면허 취득자가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 21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면허, 실시계획승인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2) 또한, 산업법 제3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제44조에 따른 매립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은 없음
- 3) 따라서, 산업법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인 공유수면법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준공검사 전 사용신청시 산단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또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단개발사업의 지장여부를 산업법에 따라 검토하며, 매립지는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적합여부 등에 대해 공유수면법에 따라 검토해야 함

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2-10. 준공된 매립지의 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연안 58160- 219, '99. 5.25)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령에 의하여 통영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동 매립공사에 참여한 민간투자자에게 투자비 상당의 매립지를 배분하기로 하고, 매립지의 몫은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와 민간투자자가 각각 추천한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으로 정하기로 협약하였으나 분배할 매립지의 재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매립승인을 받는 통영시와 동 매립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자간에 협의(협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다) 이 유

통영시(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2-11. 매립승인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공용 도로 지하에 매설된 LNG 가스배관의 점용료 부과여부(연안 58160-285, '99. 6.24)

가) 질의요지

한국가스공사의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시 동사의 LNG가스배관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공용지로서 국가에 귀속하면서 5년간 유지보수하도록 하였을 경우 이들 배관시설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경우 외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다) 이 유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와 동시에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매립승인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동법 제2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를 모두 취득하기 때문이며, 국가에 귀속된 도로의 5년간 유지보수의무는 국가귀속 매립지의 하자보수책임에 불과함

2-12. 공유수면매립관련 질의(연안 58160-537, '99. 11. 1)

가) 질의요지

구 공유수면매립법(이하 1921. 4. 9 제정된 것을 말합니다)에 의하여 토지개량 사업으로 1929. 3.20 매립면허하고 1930년대에 준공인가된 매립지중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제방(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를 국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전단에서 “매립공사의 준공인가가 있었을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준공인가일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단서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로서 매립면허의 조건으로 특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는 당시 조선공유수면매립령시행규칙(1924. 6) 제28조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대상인 제방(토지)의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1929. 3.20(면허번호 경기도 제328호) 매립면허서와 면허조건 및 준공인가서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찾을 수가 없더라도 당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방을 제외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방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및 조선공유수면매립령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제방(토지)의 소유권을 개인이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봄
- 이 경우 면허관청은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 관련서류 등을 다시 찾아 검토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국유재산법령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13. 매립지의 가격산정에 대한 질의(연안 58160- 602, '99.11.19)

가) 질의요지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이라 함은 필지별 평가액을 모두 합한 총평가액인지 또는 필지별 개별평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필지별 매립지의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매립지 전체를 재평가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목적에 따라 지적법상 2이상의 지목·필지로 구분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개별매립지는 적정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이라 함은 필지별 평가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개별매립지만 대상으로 다시 평가하게 됨

2-1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총사업비 산정관련 질의 (연안 58160-209, 2000. 3.14)

가) 질의요지

1997.10.30 매립면허시 준공인가 기간이 1999. 3.31 이었으나, 피면허자의 귀책사유(공정부진 등)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1999. 8.31 준공인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매립공사의 총사업비를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현행 공유수면매립법(법률 제5911호, 1999. 2. 8)은 1999. 8. 9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시행일 이후 준공인가신청에 의한 총사업비 산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동법시행령 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매립면허를 받아 시행중인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중 건설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아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2-15.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연안 58160-327, 2000. 4. 18)

가) 질의요지

중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현재 매립공사 시행중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정 매립법 시행후에 국가계획(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어떤 규정에 의거 매립목적 변경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공사 실시계획은 매립면허를 받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정하는 것으로서 귀 도의 의견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
-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전의 규정에 의거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전의 법 제 21조의2의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 동 규정의 해석상 준공인가전의 기간도 목적변경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매립목적 변경가능여부는 동 규정의 단서조항에 의거, 당해 매립지의 일정부분을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용지 등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이거나 또는 국가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면허관청에서 당초 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 처리할 사안으로 사료됨
 - 다만, 매립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당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2-16.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연안 58160-455, 2000. 6. 8)

가) 질의요지

- 1) 1972~1977년에 매립한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청원리 1249번지 일대(45만 평)의 매립당시 매립목적은 알고자하는 경우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와 매립목적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권자는
- 2)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농지로 되었을 경우 동 부지를 “지역균형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절의 복합단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매립목적과 부합여부

나) 회신내용

- 1) 매립당시의 매립목적은 면허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해당 매립지의 토지대장을 열람할 경우 최초의 매립목적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위 매립지의 “면허관청”은 농·축산업을 목적으로 한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3,000ha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재위임), 무역항만구역내는 지방해양수산청장, 그 외의 바다·바닷가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는 시·도지사이나, 동 매립지는 매립목적과 관계없이 면허관청은 경기도일 것으로 사료됨
 - 매립지의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은 1986.12.31이후 면허받은 매립면허에 대하여만 준공후 5년(1999. 8. 9이후 매립면허는 20년)이내에 매립목적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동 매립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2) 및 3) 현재 토지대장에 매립지가 농지로 되어 있을 경우 “지역균형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절의 복합단지에 적합한지 여부는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토된 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을 운용하고 있는 농림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2-17.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연안 58160-553, 2000. 7. 3)

가) 질의요지

1963. 6. 19 매립지의 용도를 공장용지로 매립면허를 받아 1968. 4. 9 준공하여 30여년간 사용하다가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매립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은 1986.12.31일 이후 매립면허받은 매립지에 대하여만 준공후 5년(1999. 8. 9이후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20년)이내에 매립목적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 매립지는 1963. 6.19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18.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연안계획과-147, 2012.1.19)

가) 질의요지

완충녹지의 변경(완충녹지에 차량 출구 개설, 공공보행통로 설치, 완충녹지를 경관녹지로의 세분변경, 녹지 면적은 동일하나 위치와 선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립목적 변경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별표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매립면허신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동 공유수면 매립면허 시에 명시된 동일 매립목적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공시설용지 중에서 완충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립목적 변경대상이 아님

자 매립면허의 효력상실, 초과매립지 및 원상회복

2-19. 공유수면의 초과매립지등의 귀속주체(연안 58160-364, '99. 8. 5)

가) 질의요지

경상남도 마산시장이 택지조성을 위하여 매립승인을 얻은 마산항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신청면적(61,587.3㎡)이 매립면허면적(61,067㎡)보다 증가되어 검토한 바, 그 내역은 매립구역외의 초과매립면적(332.2㎡)과 면허구역내의 증가면적(188.1㎡)으로 확인되어 이들 증가된 매립지의 귀속 주체가 국가인지 또는 매립 승인을 얻은 자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매립법선과 항만시설, 도로 등 공공용지의 계획선의 이동이나 변경이 없었다면 다음과 같이 증가된 매립지를 귀속할 수 있음
 - 면허구역외의 초과매립면적(332.2㎡)은 공유수면매립에관한업무처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후 국가에 귀속하여야 하고,
 - 매립면허구역내의 증가된 매립면적(188.1㎡)은 그 증감된 원인을 규명하여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시 예정된 귀속주체에 따라 각각 귀속시킬 수 있음

다) 이 유

- 매립면허구역외의 초과매립지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매립지에 해당하므로 공유수면으로의 원상회복 여부 등을 검토후 국가에 귀속토록 구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고,
- 면허구역내의 증가된 매립지는 매립승인 및 실시계획인가시 실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매립지의 귀속주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인가받은 대로 매립공사를 시공하였다면 매립승인을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2-20.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의 면제요건 및 국가귀속 관련 질의 (연안 58160-211, 2000. 3.15)

가) 질의요지

- 1)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제1항 단서규정의 의무면제요건중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원상회복요건중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2) 원상회복의무 면제대상에 국가 또는 국가기관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원상회복의무 면제시설의 귀속절차, 소요경비부담 및 절차이행주체는

나) 회신내용

- 1)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원상회복할 경제적 가치와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및 원상회복을 할 피면허자의 능력(파산의 정도)등을 종합검토하여 면허관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의 기준은 매립지의 경제적가치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손실보다 큰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판단기준은 가능하다면 관련 전문가의 검토 또는 용역결과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면허관청에서 결정할 사안임

- 2)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도 원상회복의무 면제대상이고, 원상회복의무 면제시설의 귀속은 면허관청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지적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면허관청에서 관련예산을 확보 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국가에 귀속될 재산의 관리청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2-21.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매립지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조건과 준공인가 여부(연안 58160-452, 2000. 6. 7)

가) 질의요지

- 1)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매립지에 대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당초 사업시행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환경영향 재평가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원상회복의무 면제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2) 매립완료후 장기간 경과되어 자연침하 및 건조로 지반이 안정되었고 부지활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현 상황에서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가능한 지 여부
- 3)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대로 시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 환경영향평가결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인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면제를 위한 환경영향관련 재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나) 회신내용

- 1) 및 3) 공유수면매립법령에 의거 매립면허가 실효된 매립지의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 면제시 면허관청에서 신청자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역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면허관청에서 공유수면 원상회복면제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 등의 반발 및 민원에 따라 동 실효된 매립지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 또는 용역결과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전적으로 원상회복면제 신청자인 귀사령부에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매립사업 이전의 환경영향평가는 매립공사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면허관청에서 요구하는 원상회복면제 조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 2) 동 매립지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의거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 상황에서 부지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지라도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가 불가능하고 매립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하거나 또는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

3. 법령해석



3-1.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10-0057, 2010.4.16)

가) 질의요지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회 답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사 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하고(제1호), “바닷가”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하며(제2호),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등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하고(제1호), “바닷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제1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 제외)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제2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서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립의 대상이 바닷가만이라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의 부분으로서 그 실질은 토지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바닷가만으로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취지에 따른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바닷가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한 것은 바다와 바닷가를 함께 매립할 경우 바닷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매립된 바다 부분과 바닷가 부분의 토지의 물리적인 차이에 따른 토지활용상의 문제 외에도, 바다를 매립하여 그 바다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바닷가 부분은 미등록 토지로 남게 되어 토지를 매립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게 되므로 바닷가를 바다와 함께 매립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바닷가만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는 매립공사의 준공 이후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

어 있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바닷가’ 외의 매립지 중에서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국가가 취득하는 바닷가에 해당하는 매립지 외의 공유수면 매립지 중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통하여 회수하도록 한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닷가만을 같은 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같은 법이 예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3-2.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제16조 등) (법제처 법령해석례 10-0205, 2010.8.23)

가)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지 여부

나) 회 답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다) 사 유

우선 인·허가의 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와 할 것이므로, 법률의 분명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허가의 의제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까지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은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인·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09-0426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의제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할 때에 관련되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함께 처리하도록 일원화하는 한편, 함께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개별법상의 권한 및 책임과 전문성이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과 같은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거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까지 당연히 의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한 인·허가 의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제적 요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가 있을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 외에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3-3.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법률의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지[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13-0135, 2013.5.22]

가) 질의요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정된 공유수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회 답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법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 사 유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은 제14조제1항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함)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은 제26조제1항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공유수면법이 제정되면서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이 폐지되었는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내용을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법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기존 법령과 신 법령 간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차별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 방식을 취하나, 구체적으로는 신규법령의 연속성은 체계의 형식적 변경만이 아니라 내용상의 실질적 변경도 함께 고려하여, 폐지·제정의 방식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폐지된 종전의 법령내용과 비교하여 실질적 또는 본질적 변경이 없다면,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폐지·제정된 법령과 전부 개정된 법령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참조), 제정되는 법령이 폐지되는 법령과 체제 및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정되는 법령에서 폐지되는 법령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내용을 승계하지는 않았지만,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7. 26. 회신 10-020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에는 폐지된 「공유수면매립법」과 비교하여 제정된 공유수면법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와 공유수면법의 제정 이후에도 종전 부칙이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우선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는 외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을 뿐, 입법목적과 공유수면매립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양 법률의 제도 자체에 동질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발췌) 참조], 공유수면법이 폐지·제정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과의 사이에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변경 사항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의 범위

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제정된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에서 폐지된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 범위와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이 실효된다고 보게 되면 제정된 공유수면법은 폐지된 「공유수면매립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이 제정된 공유수면법의 시행 전인지 또는 후인지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준공인가 시점의 소유권 취득의 범위가 사후입법으로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은 자의 신뢰 보호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이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법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3-4.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례13-0151, 2013.8.14]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나) 회 답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사 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바다”로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지적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바다의 시작 지점은 지적법에 따른 해안선이고, 이 때 해안선은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으로서 만조수위선과 같은 지점을 의미하며, 공유수면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상의 간석지는 그 개념상 항상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에 포함되어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바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공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자연현상에 따라 설정되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간의 외면적 속성이 바다 또는 바닷가의 개념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라 하더라도 조석에 의하여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다면 공유수면법에 따른 간석지 및 바다로서의 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종전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원상회복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 간석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제4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는데(제2호), 이 조항들은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구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공유수면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현행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2항제2호로 각각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본인 소유의 간석지라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포함된 이상, 해당 지역을 토지로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령의 체계상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보건대(구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발췌자료(1998. 1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참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보는 것이 공유수면법의 개정 연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임

니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 공유수면법상의 공유수면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도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 또는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임을 전제로 하되, 다만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유수면의 매립과는 달리 그 소유권자의 토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매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특례적인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해당 조항이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공유수면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수면 관련 판례

1. 공유수면 관리 ○
2. 공유수면 매립 ○

1. 공유수면 관리



1-1. 대법원 1978. 5. 9. 선고78누4

가) 판시사항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작물 설치허가로서 건축허가에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작물설치허가에 의거한 그 준공검사를 받은바 있다고 하여 이로서 이 사건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5조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신할 수는 없다.

1-2. 대법원 1980. 4.22. 선고78누 90판결

가) 판시사항

본조에 의한 소송의 병합은 행정소송이 적합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나) 판결요지

원고는 본건에서 행정소송법 제17조에 의하여 위 본위적 청구(공작물 설치허가 처분취소)인 행정소송과 관련되었다 하여 예비적인 손해배상 및 부당관련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본위된 청구로서 병합한 예비적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1-3. 대법원 1986. 2.25. 선고85누664

가) 판시사항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나) 판결요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1-4. 대법원 1989. 7.25. 88누11926

가) 판시사항

허가신청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따라야 할 허가기준

나)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청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더라도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5. 대법원 1990. 2.21. 판결90누769

가) 판시사항

- 1)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의 징수 가부 (적극)
- 2)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인 호를 점용하는 경우 그 수면과 바닥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점용료를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 3) 5년간의 점·사용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요지

-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여도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상 관리청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 2) 공유수면인 호는 지적법상 지목이 유지로서 그 수면과 바닥을 모두 포함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식어업을 위하여 점용한 것은 영랑호 수면뿐만 아니라 그 해당 바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점·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의 별표1의 산정기준 중 수면과 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항목인 구분 2의6호(1988.3.23. 개정이후에는 7호)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 3) 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어업면허를 하면서 원고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면 단지 피고가 5년간의 점·사용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6. 대법원 1990. 3.13. 선고90누 516판결

가) 판시사항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한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제6호, 제1항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 제품 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바,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유가 기준 옥탄값인 88에 못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 석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 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도 적지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유사휘발유판매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1-7. 대법원 1990. 6.22. 판결89도2267

가) 판시사항

-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 중에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는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이 공유수면을 정의함에 있어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는 하천법에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하천에 대한 위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천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에는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된다.
- 2)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지는 아니한다.

1-8. 대법원 1991.10.11. 선고90누 8688판결

가) 판시사항

- 1)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동의를 얻어야 할 하천법 제28조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범위
- 2) 하천부지점용허가의 법적성질(=자유재량행위)과 그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허가조건이나 하천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판결요지

- 1)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하천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동의를 얻어야 할 같은법 제28조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에는 같은법 제25조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인 “기득하천사용자”는 물론,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포함되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실상 점용하고 있었던 자는 포함될 수 없다.
- 2)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25조 단서가 하천의 오염방지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의 면으로 보나 법규정으로 보나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명백하다.
- 3)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허가조건이나 하천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9. 대법원 1991.11.22. 선고91누 2755판결

가) 판시사항

하천부지상 무허가 건물을 일정기한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하여 주었으니 위 기한경과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판결요지

원고가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는 당초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하천부지를 타에 임대하여 무허가 가건물을 축조하게 하였으나, 일정기한내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다짐하므로 피고가 이를 특별히 부관으로 명시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위 철거기한 경과후 피고의 수차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고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10. 대법원 1992. 4.10. 판결91다31562

가) 판시사항

- 1) 포락된 토지에 소유권 소멸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포락 당시)
- 2) 토지전부가 포락되었는데도 소유자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이를 원상 복구하는 데는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시가가 상당히 저렴하여 손해를 보게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나) 판결요지

- 1)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여부는 소멸당시의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2) 토지전부가 소멸되어 가쪽얕은 곳의 수심은 1미터정도이고, 안쪽 깊은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수면아래 침하되고 있었는데도 소유자들은 뒤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포락당시를 기준으로 토지바깥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8억원 가까운 정도의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결하여 있는 군사시설(비행장)로 인한 제한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억여원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포락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1-11. 대법원 1992. 5. 8. 판결91누13274

가) 판시사항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허용 여부
- 3)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것이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나) 판결요지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전라남도 고시에서 그 허가시 여론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 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3) 충전소설치 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으

로서,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12. 대법원 1992. 7.23. 선고90누6651

가) 판시사항

공유수면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

나) 판결요지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것이고 그 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1-13. 대법원 1992. 9.25. 판결92다24677

가) 판시사항

- 1)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
- 2)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요지

- 1) 지적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은 그 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해면이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소조평균만조위(소조 때의 평균조수 높이)를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토지가 항상 해면 아래에 있어야만 포락을 인정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2) 한번 포락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1-14. 대법원 1992. 9.14. 92재누14

가) 판시사항

-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취지
- 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어 점유를 개시한 뒤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되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사용한 경우, 변상금징수의 가부(소극)

나) 판결요지

-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

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

- 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위 토지가 용도폐지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됨으로써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사용한 경우에는 위 '1)'항의 법조항은 그 적용이 없다.

1-15. 대법원 1992.12. 8. 선고92누 13813판결

가) 판시사항

- 1) 인·허가신청후 처분전에 관계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한정적극)
- 2)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를 기다리며 신청에 대한 처리를 이유없이 처리를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판결요지

- 1) 행정행위는 처분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후 처분전에 관계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2) 시행행위등 규제법으로부터 투전기업소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기를 기다리며 신청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가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자 그에 의하여 한 불허가처분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1-16. 대법원 1993. 5.27. 선고93누4854

가) 판시사항

- 1)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거부처분에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2) 산림훼손허가를 함에 있어 고려할 공익침해 정도의 참작방법

나) 판결요지

- 1)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의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2) 산림훼손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공익침해의 정도 예컨대 자연경관훼손정도, 소음, 분진의 정도,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훼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가할 수 있다.

1-17. 대법원 1995. 4.25. 94도1379

가) 판시사항

- 1) 공유수면관리법상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채취량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채취허가량을 초과하여 해사를 채취한 경우에 적용할 골재채취법상의 처벌 법조
- 3) 골재채취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변경승인 없는 골재채취행위를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1호는 처음부터 관리청의 허가 없이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청으로부터 채취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된 채취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는 자도 그 허가채취량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채취행위로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2)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해사의 채취허가량을 초과하여 해사를 채취한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49조 제3호,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그 소위를 같은 법 제49조 제3호로 처벌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9조 제5호로 처벌하여야 한다.
- 3) 법률이 제정, 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는 같은 법 제25조 본문에 의하여 허가내용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5조 단서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신고사항을 정할 것을 위임받은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이

라고 하더라도,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9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1-18. 대법원 1995. 8.22. 94누8129

가) 판시사항

- 1) 수익처분의 상대방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판결요지

- 1)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19. 대법원 1995. 8.25. 판결95다18659

가) 판시사항

-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개념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의 소재
- 2) 포락의 인정에 있어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 토지가액의 비교기준 시점

나) 판결요지

-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떡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 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용이 복구후의 토지가액보다 적은 경우와 같이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 2) 포락을 인정함에 있어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은 논리상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 토지가액은 동일시점에서 비교되어야 한다.

1-20. 대법원 1996. 6.14. 선고95누 14435판결

가)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판결요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

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1-21. 대법원 1998. 9. 8. 선고98두 8759판결

가) 판시사항

-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 2)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기준의 설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 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나) 판결요지

-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의 체재 및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시키는 한편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허가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규정을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1-22. 대법원 1998.10. 2. 선고96누 5445판결

가) 판시사항

-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법령의 근거없이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및 그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판결요지

-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 2)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를 밝히게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1-23. 대법원 1998.12.23. 선고98도 588판결

가) 판시사항

규사광업권자가 광업권 설정구역 내에서 골재채취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 경우, 골재채취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나) 판결요지

규사와 모래가 외관상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규소를 90% 이상 함유한 규사는

광업법상의 광물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모래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로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광업법 제5조 제1항이 광업권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광업법이 광업권자가 채굴한 광물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골재가격에 처분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음은 명백하나, 그렇다고 하여 광업권자가 허가 없이 광물이 아닌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맥을 찾아 갱도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만일 규사를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인 모래를 채취하였거나 규사를 채굴한 후 그 규사를 모래로 판매하였을 뿐이라면 그 모래 또는 규사 채취에 관하여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규사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면서도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골재채취법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1-24. 대법원 1999. 3. 9. 선고98두 19070판결

가) 판시사항

- 1)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물적 시설이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나) 판결요지

- 1)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당해 건축물이 하천법 제45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1-25. 대법원 1999. 5.14. 선고98다 14030판결

가) 판시사항

-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신청한 면허기간 연장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의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수산업법의 규정이 개정·시행된 후에 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적용될 법률(=개정된 수산업법)

- 2) 어업면허의 법적 성질(=특허) 및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어업면허권자가 수산업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요지

-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수산업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 부칙 제1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허어업에 있어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산업법 부칙 제13조는 손실보상의 발생원인이 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이 개정된 같은 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법률적용에 관한 원칙을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수산업법이 시행된 후에 이루어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연장신청의 불허가처분과 그로 인한 손실보상에 적용될 법령은 당연히 개정된 현행 수산업법이다.
- 2)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고, 면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동일한 점,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과 어업면허의 취소만을 보상사유로서 규정하고 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다가,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 보상사유를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와는 달리 이를 근거로 하여 면허기간 내의 어업을 제한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이를 사유로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 제3항) 기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보장하는 반면, 이를 보상 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어업면허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1-26. 대법원 1999. 7. 9. 선고97누 20724판결

가) 판시사항

- 1) 행정재산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판결요지

- 1)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2) 국유재산중 대지일부에 복지회관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주차료를 수령하여 온 경우,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3)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1-27. 대법원 1999. 7.23. 선고99도 1981판결

가) 판시사항

광업권자가 채광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건축용·공예용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의2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적극)

나)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0조의3 제1항이 광업법상의 광물중 장식 또는 규석에 관해서만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

여 나머지 광물에 관하여 같은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1-28. 대법원 2000. 5.26. 선고98다15446 판결

가) 판시사항

-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 2) 공유수면관리법상 빈지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판결요지

-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2)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 : 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29. 대법원 2004. 5.28. 선고 2002두5016판결

가) 판시사항

- 1)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 2)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

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요지

-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2)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신청을 불허기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3)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30. 대법원 2007. 4.26. 선고 2006두18379 판결

가) 판시사항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

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 2) 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40년 간 위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며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회사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판결요지

-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규모,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40년 간 위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며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회사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31.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가) 판시사항

- 1)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3) 토지가 해면에 포락됨으로써 사권이 소멸하여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다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방을 축조함에 따라 매립면허 대상이었던 다른 매립지 부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게 된 사안에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하여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 2)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 3) 토지가 해면에 포락됨으로써 사권이 소멸하여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다가 매립면허를 초과한 매립으로 새로 생성된 사안에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하여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새로 형성된 지형이 기재된 지적도에 그 토지를 포함시켜 지목을 답 또는 잡종지로 기재

하고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1-32. 포락토지불보상 등 위원확인(1999.11.25, 98헌마456)

가)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1989. 12. 1. 명지·녹산 국가공업단지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1991.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송정동 1192의 1 하천 46,099㎡ 중 사업지구 내에 편입될 부분 45,146㎡를 청구인들을 비롯한 그 공유자들로부터 1㎡당 96,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측량 과정에서 편입면적 45,154㎡ 중 4,815 (이하 “이 사건 포락토지”라 한다)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나머지 40,339㎡와는 높이 3~4m의 제방으로 구분된 상태로 제방 바깥 바다쪽에 위치하고 있어 만조시 약 1m 가량 해수에 잠기는 사실을 알고, 부산지방법원(93가합24783호)에 청구인들을 비롯한 공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포락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공유자들이 항소 제기

나) 판단

-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그리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보상조치부작위에 대한 부분은 행정권력의 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이고, 이 사건 보상입법부작위에 대한 부분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인 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춘 것인지 본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 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의 형성을 입법자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이 사건 포락토지와 같은 자연해물지를 법률로써 재산권으로 보호할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달려 있다. 자연해물지가 일정한 이용가능성과 그에 따른 지배가능성을 가지는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예컨대 조개양식장이나 염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해물지는 일정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현재로서는 완전한 지배가 불가능하더라도 장래 자연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그 지배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자연해물지에 대한 그러한 사실상의 이용가능성 및 지배가능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가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자연해물지를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자연해물지의 특성상 그 시기, 범위 및 보호정도에 관하여 입법자는 광범위한 선택·결정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상 이 사건 포락토지와 같은 자연해물지를 재산권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는 입법자가 해면의 공공성, 해면에 대한 경제적 이용가능성, 바다와 육지의 기술적 구분가능성 등 여러 가지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자연해물지를 현재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정신이나 사유재산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포락토지는 피청구인과 청구인 들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에 해수에 포락되어 현재까지 30여년

간 그대로 방치되어 왔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포락토지는 자연해몰지로서 현행법상 재산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해상(海床)으로서 해수와 일체를 이루어 바다를 구성하여 자연의 상태 그대로 일반공용에 제공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수용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공공사업지구로 편입, 매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옛 소유자들에게 불과한 청구인들의 배타적 지배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매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여 국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락토지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보상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등 헌법규정이나 헌법해석상 도출할 수 없으며 달리 그러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

나아가서 청구인들은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에서는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흘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하천의 경우 인위적 관리·유지의 가능성 및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바다와 다르므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와 자연해몰지로 된 토지간에 법적인 취급을 달리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결국 이 사건 보상조치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상입법부작위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공유수면 매립



2-1. 대법원 1967. 3.28. 선고67다 40판결

<판결요지>

본건 토지가 원래 하천부지였다면 피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본건 토지를 경작하여 숙답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본건 토지가 공유수면이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고 그 준공인가를 한 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2. 대법원 1967. 4. 4. 선고67다 24판결

<판결요지>

공유수면의 하상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하상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2-3. 대법원 1970. 2.24. 선고69다 985판결

가) 판시사항

피보전권리자의 장래의 집행보전과는 관계없이 피보전권리의 실현이 지연됨으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처분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예

나) 판결요지

조수가 다소 들어오기는 하나 지대가 높아서 간조시에는 지면이 완전히 드러나

는 갈대밭과 갯벌인 까닭에 어장이 될 수 없는 곳을 신청인이 매립한 경우, 위 매립지역을 부근지형상 이를 매립하고 아니함에 따라 강물과 바닷물의 소통이 달라질 수 없고 또한 위 구역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래전부터 해태양식 등을 하고 있는 어촌계 및 그 계원들의 어업상의 활동에 영향이 없다면 위 어촌계나 그 계원들은 본조 및 본법 제6조 소정의 매립을 행하는 구역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나 본법 제17조 소정의 보상을 받을 권리자로 볼 수 없다. 피보전권리자의 장래의 집행보전과는 관계없이 피보전권리의 실현이 지연됨으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처분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예

2-4. 대법원 1971. 3.23. 선고71다 153판결

가) 판시사항

동의없이 한 매립면허 효력

나)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구역 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없이 하였다 하더라도 위 면허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2-5. 대법원 1972. 9.26. 선고72다 1070판결

<판결요지>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조치가 없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 공유수면의 일부가 불법 매립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준공인가처분이 법률상 불능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6. 대법원 1973. 6.29. 선고73다 23판결

〈판결요지〉

신청인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를 피신청인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권 및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로 인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정보가 건설부장관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위 장관이 매립면허권자로서 매립준공허가를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에 속하는 이상 위 가처분 으로서는 행정행위인 위 공유수면매립준공허가를 금지하는 효력이 없다.(참조조 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2-7. 대법원 1974. 6.25. 선고 74다 136판결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그 지정된 기간내에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준공기간 도주로 인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면허를 받았던 자 는 매립지를 원상회복할 의무는 있어도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가 매립면허가 실효된 토지에 대하여 국유화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국가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 환청구는 그 이유없다.

2-8. 대법원 1975. 6.10. 선고74다 1113판결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주민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매립 권은 그 공동명여자들의 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50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민법 제704조)

2-9. 대법원 1979. 8.28. 판결79누74

가) 판시사항

- 1) 매립면허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2)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닌 재량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2)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1962.3.27 각령 제570호) 제10조 제1항(현행 제 1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부관에 사실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매립에 취로한 영세민은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2-10. 대법원 1981.10.24. 선고81다 563판결

가)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뒤에 투입한 매립공사비와 사무관리비용 여부 (소극)

나)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그 준공 기한의 도과로 자동 실효된 사실이 통지된후에 원고가 동 매립면허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7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매립공사는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타인인 피고 나라(공유수면 소유자)나 도(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공사비 1700만원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필요비라고 할 수 없다.(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민법 제739조)

2-11. 대법원 1981.11.24. 선고80다 2303판결

가) 판시사항

국가행정사무(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를 위임처리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나)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나,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진다, 따라서, 경기도 지사가 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사무라고 할 것이니 경기도는 그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2-12. 대법원 1982.12.28. 선고80다 731판결

가) 판시사항

- 1)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을 받는 자가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 2) '기성매립지로서 도시계획공사완료 지역은 공사실비로서 연고자에게 분양할 것'이라는 부관이 붙은 매립면허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3) 공유수면매립 면허의 성질
- 4) 재량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5)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현재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 사건 당사자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수받을 지위란 피고가 부관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결과 반사적으로 받게될 사실상 경제상의 지위란 피고가 부관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결과 반사적으로 받게 될 사실상 경제상의 지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이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확인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28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2-13. 대법원 1983. 7.12. 선고83다카 213판결

가) 판시사항

실효된 당초의 매립면허권자의 시공결과를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한 제2의 매립면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나) 판결요지

원고가 지정된 준공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하였거나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그 공사 시행구역내의 기성 시설물건 등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취한바가 없다면 이는 여전히 원고의 권리에 속하고 피고가 새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미 이루어 놓은 매립공사 시공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출연과 노력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1조)

2-14. 대법원 1984.12.11. 선고81다 630판결

가) 판시사항

- 1)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 2) 면허관청의 허가없는 공유수면매립면허양도의 효력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그 준공인가가 피고 장치삼의 명의로 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분문의 가정에 따라 매립의 면허를 받고 피고 장치삼의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가 아닌 한 같은법 제14조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2)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하는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명으로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매립의 성질이나 위 각 규정의 취지로 보아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에 있어서 면허관청의 허가는 효력요건이고 따라서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가사 피고 장치삼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소위 목포시에 양도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그 양도에 면허관청인 전라남도지사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등이 이를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법률상 아무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29조)

2-15. 대법원 1985. 5.28. 선고81다카 490판결

가) 판시사항

- 1) 준공인가 조건으로 비로소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 토지의 국유화가 공유수면매립추인 조건상의 국유화 조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 유무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은 매립면허 조건으로만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준공인가 조건으로서 비로소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66.8.3 법률 제1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추인은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매립면허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동 추인조건은 매립면허조건과 같이 보아야 한다.
- 2) 토지의 국유화가 공유수면매립추인 조건상의 국유화 조항에 기한 것이고 국가의 수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에게는 손실보상금지급의무가 없다.(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 헌법 제22조 제3항)

2-16. 대법원 1989. 9.12. 선고88누9206판결

가) 판시사항

-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처분이 자유재량 행위인지 여부(적극) 나. 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후 매립공사를 완공한 경우 면허관청이 면허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판결요지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일단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행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면허부여와 같이 면허관청의 자

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개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시행전에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준공기간초과로 실효된 후에 매립공사를 완공하였다면 면허실효 후의 시공은 무면허자의 매립행위에 불과하므로 면허관청이 이에 기속을 받아 면허를 회복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2-17. 대법원 1989. 9.12. 선고89다 16706판결

가)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명의신탁자가 매립지에 관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의 소유권귀속 관계

나)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받고 병 명의로 매립면허의 양도양수허가를 받은 후 그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병 명의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갑이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전에 위 매립면허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내부적으로 병이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병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준공인가일에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소장이 없다.(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2-18. 대법원 1991. 1.29. 선고90다 6781판결

가) 판시사항

-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매립면허처분시)

- 2)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어업권의 기간연장허가가 거부되어 어업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된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요지

-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 여부는 매립면허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립면허신청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매립면허처분이 있기 이전에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립면허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 2)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어업권의 기간연장허가가 거부되어 어업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된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참조조문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제16조,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20조)

2-19. 대법원 1991. 3.22. 선고96다 3890판결

가) 판시사항

- 1) 빈지(濱地)가 용도폐지되지 않았으나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 2)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빈지(濱地)인 경우,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인 빈지(濱地)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그 토지는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는다.

2-20. 대법원 1991. 6.25. 선고90다 17040판결

가) 판시사항

- 1)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 그 공사완공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준공인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소극)
- 2) 위 ‘1)’항의 약정 속에 그와 같이 양도할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인 명의를 변경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자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준공인가신

청시에 면허자가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잔여매립지 중 국가에 귀속되는 것 등을 제외한 잔여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준공인가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매립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 그 공사완공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사실상 변론종결일 현재 준공인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특정하여 인용할 수 없으니 결국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2) 위 ‘가’항의 약정 속에 그와 같이 양도할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인 명의를 변경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법 제105조)

2-21. 대법원 1992. 5.26. 선고92다 9609판결

가) 판시사항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갑이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나) 판결요지

갑이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그 소유권은 일단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른 분배를 하여야 할 행정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나, 갑이 위 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수분배자들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2-22. 대법원 1992. 6. 9. 선고92다 8637판결

가) 판시사항

- 1)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유지의 매립에 대하여 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62. 1. 20. 법률 제986호)에 의한 매립면허의 효력(=당연무효)
- 2)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계쟁유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공유수면매립법상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나) 판결요지

- 1) 유지의 매립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1962.1.20. 법률 제986호)에 의한 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2)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계쟁유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공유수면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위 유지가 그 일부는 사실상 다랭이논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토사모대기산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면 위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의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므로, 원심으로서 유지의 매립면허에 있어 그것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23. 대법원 1992. 7. 6. 선고92마 54판결

가) 판시사항

- 1) 민사소송법상의 가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채무자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한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국가)에 대하여 위 면허권에 관한 명의 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의 금지를 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면허권 양도의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3)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나) 판결요지

- 1)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2)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위 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의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여 가치분신청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채무자에 대한 신청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취지를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

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한 후, 이 부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조치를 수긍한 사례.

- 3)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4조)

2-24. 대법원 1992.10.23. 선고91다 40238판결

가) 판시사항

- 1) 갑으로부터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갑과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갑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정하여지지 못하였다면,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 해당 토지의 갑 소유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 준공인가 전의 매립지 매매 등을 금지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계약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판결요지

- 1) 갑으로부터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갑과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갑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정하여지지 못하였다면,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 해당 토지의 갑 소유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상의 의무는 수면허자가 면허권자에게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준공인가 전의 매립지 매매 등을 금지하는 매립면허 부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계약은 당연무효가 아니다.(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제186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

2-25. 대법원 1993. 1.12. 선고91다 8142판결

가) 판시사항

-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 2)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3)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4)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

나) 판결요지

-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 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 2)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 3)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되었다면 그 취하의 효력은 소송구조사건에도 미친다.
- 4)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익환원법과 거래사례비교법 중 반드시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에 의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일방의 방법에 의한 결정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2-26. 대법원 1993. 4.13. 선고93다 1169판결

가)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나)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2-27. 대법원 1993. 6.22. 선고93다 9125판결

가)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 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의 효력

나)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위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제2조)

2-28. 대법원 1994. 3.25. 선고93다 45701판결**가) 판시사항**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의 의미

나) 판결요지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이라 함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참조조문 :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2-29. 대법원 1995.11.14. 선고94다 50922판결**가) 판시사항**

- 1) 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의한 매립 후에도 그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성의 상실 여부
- 2) 공공용재산인 공유수면이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성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 3) 불용통물인 행정재산에 대한 관재 당국의 매각처분 및 그에 대한 사인간의 매매의 효력

나) 판결요지

- 1) 유지에 대한 매립 면허를 받아 이를 매립함에 있어 그 중 일부를 저수지로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체납한 경우, 그 부분 토지는 공유수면이었던 토지의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유수면성을 상실하

지 아니한다.

- 2)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이 그 이후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통물이므로 비록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사인간의 매매계약 역시 불용통물에 대한 매매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2-30. 대법원 1996. 3.22. 선고96다 3890판결

가) 판시사항

- 1) 빈지(濱地)가 용도폐지되지 않았으나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 2)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빈지(濱地)인 경우,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인 빈지(濱地)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

로, 그 토지는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4조, 제5조제2항, 제3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2-31. 대법원 1996. 5.28. 선고95다 52383판결

가) 판시사항

-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으나 공용폐지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 2)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처분의 효력(무효)
- 3)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매계약 체결을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 국가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착오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매각하고 대금을 완납받은 후 그 토지가 공용폐지된 뒤에, 그 토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 2)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 3)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

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가지고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4) 국가가 착오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까지 완납받았으며 그 불하계약 체결 후 약 40년이 경과한 후 그 토지가 공용폐지에 의하여 잡종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32. 대법원 1996. 6.14. 선고94다 46343판결

가) 판시사항

- 1)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가 공유수면매립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인지 여부(소극)
- 2) 개인 소유 염전의 부속시설인 염수용 배수로를 공용 배수시설(구거)로 보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국유화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이라고 볼 수 없다.
-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유화처분 중, 염수용 배수로는 염전 경영에 필수적인 염전 부속시설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단순한 배수시설(구거)로 보아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1987. 10. 13. 대통령령 제12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시킨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2-33. 대법원 1996. 6.28. 선고96다 13903판결

가) 판시사항

무면허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를 법률에 의하여 국유화 조치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의 성부(소극)

나) 판결요지

면허 없이 방조제 복구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국가가 그 법규정에 의하여 무면허로 조성된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비록 국가가 그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민법 제741조)

2-34. 대법원 1997. 3.28. 선고96다 3258판결

가) 판시사항

- 1)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2) 김양식업 어업면허기간이 끝난 후 재면허신청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부된 자들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들의 간척사업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함이 없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므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대상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을 함이 없이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된다.
- 2) 김양식업 어업면허기간이 끝난 후 재면허신청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부된 자들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간척사업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2-35. 대법원 1997. 4. 8. 선고95다 34521판결

가) 판시사항

- 1)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역자의 권리의무의 귀속(=합유)
- 2)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매립지가 공유로 보존등기된 경우, 장차 매립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합유등기로의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

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들은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된다.

-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되는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가 남으로써 공동면허권자간의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그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관계가 존속되고, 공동면허권자들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법원의 축락등기에 의하여 토지들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따라서 여전히 합유관계에 있는 토지들에 관하여 경로된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제 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토지들이 장차 공동면허권자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합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오류를 정정해 달라는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민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2-36. 대법원 1997. 9.26. 선고96다 50605판결

가)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간척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동어업면허 및 관행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 없이 방조제 설치공사를 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어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간척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방조제 설치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적 사업의 하나로서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순수한 사경제적 작용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간척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배상 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라야 제소할 수 있다.(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9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2-37. 대법원 1997.10.10. 선고96다 3838판결

가) 판시사항

- 1)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의 의미
- 2)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부칙(1990. 8. 1.) 제11조의 위헌 여부(소극)
- 3)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소정의 손실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매립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제5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는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동어업의 어업권원부에 입어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한다.
- 2) 1990. 8. 1. 수산업법 개정으로 입어의 관행에 관한 제40조가 개정되고 제2

조 제7호에 입어 및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두는 한편, 입어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11조를 두고 제81조 및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된 것) 제61, 62조에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은 구 수산업법의 문언상 명확하지 않던 입어의 관행 내지는 관행에 의한 입어자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막고 보상의 기준도 명확히 하기 위한 발전적인 입법 작용의 결과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구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의 지위에 어떤 제한이 가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니, 개정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부칙 제11조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3)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제2호, 제16조)

2-38. 대법원 1997.11.14. 선고97다 13016판결

가) 판시사항

- 1)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판결요지

- 1)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전원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는 점(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기업자가 위 신청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17조, 제5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2)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 쌍방이 공유수면매립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소로서 구할 자격도 없다.(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2-39. 대법원 1998. 2.27. 선고97다 46450판결

가) 판시사항

- 1) 구 수산업법 제81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 방법(민사소송)

- 2)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행정소송)
- 3) 구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한 허가어업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요지

- 1)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4조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 제8호(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인하여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더 이상 허가어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실보상청구에도 같이 보아야 한다.
- 2)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 3) 공유수면매립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6

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6조는 제5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는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권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아님은 분명하고, 같은 법조 제6호에서 ‘어업권’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한 허가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권자로 볼 수도 없다.(참조조문 :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

2-40. 대법원 1998. 4.14. 선고95다 15032판결

가) 판시사항

-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보상 없이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적극) 및 보상받을 권리자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과 손해배상의 범위
-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손실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방법

나) 판결요지

- 1)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함이 없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그 불법행위시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採捕)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실질상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한바, 당시의 구 수산업법령에 신고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 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은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액 산정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41. 대법원 1999. 6.11. 선고98두 11502판결

가) 판시사항

- 1)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소정의 취득시기

- 2)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사실을 알지못한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지가 취득세증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제외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매립면허를 받은자가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날인지 여부(적극)

나) 판결요지

- 1)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 등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3항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매립지 등을 취득한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 이후에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의 원시취득의 취득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취득의 취득일을 매수인의 매립지 등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10. 법률 제 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의 규정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4항제9호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사실을 알지못한 경우에도 위 9호가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날이 4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할 것이다.

2-42. 대법원 1999. 9. 7. 선고98두 14549판결

가) 판시사항

- 1)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도 종합토지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 2)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사용허가일)

나) 판결요지

- 1) 지방세법 제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고 토지는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2)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 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3조제10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43.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의 손해배상 (97헌바76 구수산업법 제2조제7호 등 위헌소원)

가) 사건개요

- 홍성민의 12명은 호미·삽 등을 이용하여 상당기간동안 자연산 바지락, 굴

등을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없이 채취하여 왔거나 어업신고를 하였으나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원부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 등에 의한 어장상실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원고청구기간 판결 및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선고받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

나) 판 단

1) 관행에 의한 입어권의 본질

구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공동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하는데, 다른 어업권과는 달리 수면이나 그 바닥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수면이나 그 바닥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이므로 다른 어업자와 공동으로 수면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그 공유수면에서 어업을 해하던 어업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공동어업권에게만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관행에 따라 어업을 하여 온 자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되므로 수산업법은 제정시부터 구 수산업법에 의한 전문개정시까지 관행에 의한 입어를 보호하여 왔다.

관행에 의한 입어권(이하 “관행어업권”이라 한다)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관행에 따른 어업권은 물권인 양식어업권과 정치어업권이 설정되면 그 공유수면내에서는 이들 어업권과 저촉되므로 어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만, 같은 물권인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양자가 권리의 내용상 양립할 수 있으므로 위 관행에 따른 어업권에 기하여 입어할 수 있다”고 하며,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관행에 의하여 어

업을 하여 온 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고 나면 비로소 공동어업권에 제한을 가하는 제한물권적인 입어권이 발생하며 공동어업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 7.11, 선고 88다카14250판결). 따라서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존속에 있어서도 공동어업권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으며 공동어업권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서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구 수산업법 제40조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입어자에 한하여 공동어업권자와 함께 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는 구 수산업법 제2조제7호 소정의 입어자에 한하여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입어자에 한하여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관행어업권자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어업자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행어업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재산권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산권의 보장은 국민개개인의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 기초위에서 그들이 현재 누

리고 있는 구체적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헌재 1993. 7.29, 92헌바20, 판례집 5-2,36,44, 1994. 2.24, 92헌가15 등, 판례집 6-1,38,55).

중전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정한 기간내에 등록만하면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행사방법을 변경 내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구 수산업법 시행이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종래 인정되어 오던 관행어업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등록만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3조제2항과 제23조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등록을 하여야만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침해받은 신뢰이익은 기껏해야 등록에 관계없이 인정받던 권리를 등록하여야 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관행어업권을 등록함에 있어서 어떤 요건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일단 등록을 마치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관행어업권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관행어업권자들에게 일정기간내에 관행어업권의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무리한 행위 또는 무익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이에 반하여 구 수산업법 시행당시 이미 전국연안의 수면이 공동어업으로

정리되어 있었으므로 새로이 관행어업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종래에 존재하던 관행어업권지를 정함으로써 관행어업권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며 불법어업자의 무분별한 관행어업권 주장을 배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자들이 침해받은 신뢰이익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1997.3.27, 94헌마196등, 판례집 9-1,375,383)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동어장내의 입어제도를 개선하여 생활근거지 인근 수면에서 어업을 하여 온 영세어민을 보호하고, 입어자의 대상을 명백히 하여 어업피해의 보상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등 입어와 관련된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며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어업자의 무분별한 관행어업권 주장을 배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의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 불분명하던 관행어업관계를 명확히 확정하자는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특히 이 사건 심

판대상조항이 종전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관행어업권자로 인정되던 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등록만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행어업권자에게 최소한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 피해의 최소성

관행어업권자에 대하여 2년기간의 기한을 두고 관행어업권의 등록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기간내에 관행어업권의 등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설정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만을 과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등록기간을 경과한 관행어업권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사이의 균형성

관행어업권자에게 관행어업권을 보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고 난 이후에 관행어업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단순히 과거에 발생하였던 관행어업권을 무조건 소멸시키는 것과는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난 이후에 관행어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의 사이에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바)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구 수산업법 시행이전에 공동어업권 원부에 입어보존등록을 마쳤거나 구 수산업법 시행이후 공동어업권이 면허

되고 그 원부에 관행어업권을 등록할 수 없는 관행어업권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어업권이 등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행어업권을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어업에 관한 어업권원부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관행어업권의 등록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즉 관행어업권의 등록은 공동어업권의 등록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행어업권자에 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공동어업권이 등록된 어장의 관행어업권자와 그렇지 아니한 관행어업권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어업권원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어업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사)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 홍성민등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제2호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제40조제1항,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및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다음 5와 같은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 제2항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 의견이 있는 이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44. 불법매립지의 국가귀속(98헌바34)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 위헌소원

가) 사건개요

- 전남 승주군 해룡면 호두리 9의5 전 16,531㎡는 원래 공유수면이던 곳으로 청구인이 면허없이 1984. 3경부터 1985. 5경에 걸쳐 토사를 투입하여 매립함으로써 토지가 조성되었는데, 공유수면의 소유자인 국가가 1989.12. 1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을 순천시가 위 토지의 공단부지 편입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책정된 769,991,500원에서 어업권 손실보상금 24,647,721원을 뺀 나머지 745,343,799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여 순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 제1심 및 제2심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나) 판단

1)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법률관계

공유수면은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토지가 조성되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반면, 당해 수면에 권리나 시설을 가진 자 및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환경보존이나 어장의 보호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토의 보존·이용 및 관리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된 다음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매립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얻도록 하고 있다.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

수산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한편 매립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청구인처럼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면허실효후 1년이내에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여부

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은 사적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며(헌재 1999. 4.29, 96헌바55, 판례집 11-1, 462, 468) 사법상·공법상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재산가치적 법익을 포함한다.

이 사건 국유화의 대상이 된 매립공사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매립자가 가지는 권리가 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재산권인지를 보면, 이는 민법상 부합의 법리가 공유수면매립을 위하여 매립자가 투입한 토사 등의 물건에 적용되는가 라는 논의와 관련된다.

공유수면에 투입된 토사 등이 공유수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한다면 토사 등의 물건은 공유수면과는 별도로 매립자의 소유로 남게 되므로 그 소유권이 매립자의 재산권으로서 보호대상이 될 것이고, 만일 부합된다는 매립자의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매립자가 그 매립을 위하여 투입한 토사 등 물건의 소유권 또는 이를 상실하였을 경우 도출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헌재 1998. 3. 26, 93헌바12, 판례집 10-1, 226, 243)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수용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고, 강제적 박탈이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8. 3.26, 93헌바12, 판례집 10-1, 226, 2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무면허매립자가 시행한 매립공사 구역내의 시설 기타물건에 대하여 이를 국유로 하는 것은 매립면허가 없는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을 경우 원칙으로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 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 취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무면허 매립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투입될 비용과 자신이 수거할 수 있는 시설 및 토사 등의 가치를 비교하여 그 이익교량에 따라 매립공사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고 매립지역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을 수거함으로써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시설 기타 물건의 국유화를 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에 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국유화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강제수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무면허매립자는 매립을 위하여 투입한 시설 및 토사 등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 위하여 매립공사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의 부과는 국토를 보존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며 어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적 필요와 공유수면을 불법침해한데 대하여 이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정당성을 갖춘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매립공사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어서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매립지가 국유화되어 공업단지로 편입된 것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개인의 특정재산권을 종국적, 강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공업단지로 편입되기 훨씬 전에 이미 국유화되었을 뿐 아니라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하여 무면허 매립자에게 자신이 투입한 토사나 시설 등을 수거하여 갈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경제적인 견지에서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매립법 제26조에 따라 굳이 원상회복을 강제하는 것을 피하고 일정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것일 뿐, 신청인이 원상회복을 하면서 자신이 투입한 토사나 시설 등을 수거하여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매립공사 구역내의 시설 기타물건에 대한 국유화는 강제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가사 위와 같은 국유화를 일종의 수용으로 본다고 할 지라도, 그 전제가 되는 무면허매립자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는 결국 보상에 갈음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평등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무면허매립자는 면허를 받은 매립지와는 달리 이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매립지역내의 시설이나 기타 물건에 대한 국유화를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양자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국유화의 가능성은 매립자가 면허를 얻지 않은 채 매립

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무면허 매립자라 할지라도 원상회복의무를 다 함으로써 위 국유화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면허없는 매립자의 원상회복의무는 국토의 보존과 환경오염방지 및 어업권의 보호 등 공공적인 필요와 국가소유인 공유수면의 원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매립자가 투입한 토사와 시설 등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은 공유수면의 공공성확보라는 공공적 법익과 배치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무면허 매립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었을 경우 매립공사 구역내의 시설 기타 물건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타 참고사항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법령 규정 ○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 ○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1962.1.20 〈신규제정〉	<p>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u>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u> 단, <u>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예외로 한다.</u></p> <p>②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영 제19조 (매립지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도로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유에, 기타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써 지정하여야 한다.</p> <p>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시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의 날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1965.11.25 〈일부개정〉	<p>영 제19조 (매립지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u>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방사제·돌제·배수시설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유에, 기타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u></p> <p>〈개정 1965·10·25〉</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써 지정하여야 한다.</p> <p>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시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p>	* 경과규정 없음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단체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의 날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1986.12.31 〈일부개정〉</p>	<p>제4조 (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p> <p>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p> <p>③건설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6·12·31></p> <p>④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신설 1986·12·31></p> <p>법 제12조 (준공인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6·12·31]</p> <p>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법 제29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u>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이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4조제3항,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p> <p>영 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당해 매립지의 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다른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등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매립지의 가격은 당</p>	<p>* '88.6.27 농업 목적의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에게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2472호)</p> <p>* '08.6.28. 한국토지공사의 정부투자기관 삭제</p> <p><취지>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초의 평가와 재평가에 의한 모든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p> <p>②법 제14조제2항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u>"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잔여매립지중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년간의 자금회수기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로 한다)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하고 남은 매립지를 말한다.</p> <p>③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u>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u>(1987.10.13)</p>	<p>자는 종전의 경우 도로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사업비에 관계없이 매립지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사업비(적정이윤포함) 상당분만을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u>개발이익으로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함.</u></p> <p><경과규정> ③(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1997.4.10 〈일부개정〉</p>	<p>법 제29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4·10〉</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이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4조제3항,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1986·12·31]</p> <p>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된 빈지역(이하 이 조에서 빈지매립지라 한다)과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p>	<p>(취지)매립지중 빈지역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u>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1997·4·10></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빈지매립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잔여매립지"라 한다)중 <u>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와 빈지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이 경우 빈지매립지에 대하여는 빈지매립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1997·4·10></u></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u></p> <p>④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청구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여매립지의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4·10></p> <p>⑤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p>	<p>* 경과규정 없음</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다. <신설 1997·4·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중 관광호텔업을 위한 시설과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 휴양시설 및 민속·문화자원소개시설 <p>⑥국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지의 임대방법·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4·10></p> <p>⑦제1항의 사업비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999. 8. 9 <전부개정></p>	<p>제38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외의 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당해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법 제26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p> <p>2. 매립된 <u>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u>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u>국가</u>.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u></p> <p>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u>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는 국가</u></p> <p>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가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p>	<p>(취지)갯벌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 경과규정 없음</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는 제2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의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p>	
<p>2010.4.16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법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u>취득한다.</u></p> <p>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u>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u>,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법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준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p>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p> <p>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p>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1986.12.31 〈신설〉	법 제4조 (면허) ④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신설 1986.12.31〉	(취지)도시계획구역과 그 인근지역등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도록 함
1987.10.13 〈신설〉	영 제8조의2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등의 매립)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공유수면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진흥공사 2. 산업기지개발공사 3. 한국토지개발공사 4. 기타의 정부투자기관중 공유수면의 매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 ③법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등이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립지의 용도 및 용도별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취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해안지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부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들 지역에 있어서 개인등이 매립할 수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해당하는 경우 가. 공업용지의 경우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상업용지의 경우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용지 또는 농수산용지의 경우 : 10만제곱미터이하</p> <p>2. 해안경관의 개선이나 해안이용의 증진을 위한 해안선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화학공업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을 하는 경우</p> <p>[본조신설 1987·10·13]</p>	<p>있는 경우 그 범위를 소규모의 공업용지·상업용지·주택용지 또는 농수산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을 하는 경우등으로 한정 함(영 제8조의2제3항)</p>
<p>1997.9.28 <일부개정></p>	<p>영 제8조의2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등의 매립)</p> <p>①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공유수면을 말한다.</p> <p>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8·6·17, 1996·2·15, 1997·7·28></p> <p>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기타의 정부투자기관중 공유수면의 매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p> <p>③법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등이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1. 매립지의 용도 및 용도별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업용지의 경우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상업용지의 경우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용지 또는 농수산용지의 경우 : 10만제곱미터이하</p> <p>2. 해안경관의 개선이나 해안이용의 증진을 위한 해안선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화학공업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을 하는 경우</p> <p>[본조신설 1987·10·13]</p>	
<p>1999.8.9 <일부개정></p>	<p>법 제9조 (면허) ④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p>	
<p>1999.8.9 <일부개정></p>	<p>영 제8조 (도시계획구역등에서의 공유수면의 매립)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3. 한국토지공사 4. 한국전력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관광공사</p> <p>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23만제곱미터이하</p> <p>나. 유통·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이하</p> <p>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 10만제곱미터이하</p> <p>2. 해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정비하는 경우</p> <p>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2005.10.1 〈일부개정〉	<p>법 제9조 (면허)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영 제8조 (도시계획구역등에서의 공유수면의 매립) ① 법 제9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삭제 <2005.9.30>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관광공사 <p>②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유통·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 시설용지(별표 제17호를 말한다) : 10만제곱미터이하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취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독점적 지위 배제(현행 제8조제1항제4호 삭제)</p> <p>(1) 공유수면 매립의 수요가 없는 일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그 동안 부여되었던 공유수면 매립의 독점적 지위를 배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p> <p>(2)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6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 등 특정 지역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던 것을 발전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한국전력공사를 배제하여 5개로 축소함.</p> <p>(3)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특정 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을 실수요 위주로 허용함으로써 독점적</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지위를 이용한 무분별한 공유수면 개발을 억제하고 그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p> <p>(경과규정)(도시계획구역 등에서의 매립이 허용되는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2008.6.28 〈일부개정〉	<p>법 제9조 (면허)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가 또</p>	* 경과규정 없음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2008.6.25 〈일부개정〉</p>	<p>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u>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할 수 있다.</u>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p> <p>영 제8조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개정 2008.6.25〉 ① 삭제 〈2008.6.25〉</p> <p>②법 제9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p> <p>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23만제곱미터이하</p> <p>나. 유통·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이하</p> <p>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 시설용지(별표 제17호를 말한다) : 10만제곱미터이하</p> <p>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p> <p>3. <u>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p>	
<p>2010.10.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p>	<p>법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p>	<p>(경과규정)(매립면 허취득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 8820호('08.6.28)</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이동 <제정>	<p><u>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국토해양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u>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u></p> <p>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종전 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정부투자기관(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매립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38조(준공검사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양도양수 가능)를 적용한다. 다만, 매립목적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 법 제3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48조를 적용한다.</p>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



가 행정법상 행정행위는 행정청에서 인·허가라는 명목으로 처분되는 행위로서 ① 행정주체가 행한 행위 ② 공법영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국유재산의 매각, 대부, 물품구매·용역계약체결 등은 사법영역) ③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상급청에서 하급청에 대한 명령·동의·승인 등은 내부적 행위) ④ 권력적 단독행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 구성요소와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을 표준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구분됨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정행위 :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로서 하명, 허가, 면제로 구분됨

① 하명 : 작위(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등), 부작위(공유수면상 폐기물 투기 금지, 영업정지, 도로통행금지, 건축물의 사용금지 등), 급부(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조세부과처분 등), 수인(건강진단 수진명령 등)의 행위
이중 부작위를 명하는 행위인 금지행위는 절대적 금지(비밀결사의 금지 등)와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목욕탕 영업을 경영 등)로 구분됨

하명에 의하여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행해지고, 의무위반자에게는 처벌(행정벌)이 따르게 됨

명령·금지에 위반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② 허가 : 상대적 금지행위중 특정의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주는 처분(영업허가, 총포화약류 제조 허가, 의사면허 등)

허가여부는 행정청의 기속재량이 원칙임

허가요건에 해당되어 당연히 허가로 받는 이익은 반사적이익에 불과함

복합민원의 경우 하나의 행정청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③ 면제 : 특정의 경우로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조세면제 등)로서 허가가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인데, 면제는 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
- 형성적 행정행위 : 특정의 상대방에게 권리·능력을 설정시켜 주거나 법률상의 지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특허, 인가, 대리 구분
- ① 특허 :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특허기업(도로공사 등)의 특허, 토지수용권 설정, 도로통행료 징수, 광업허가, 어업면허),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공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공무원 임명, 귀화허가)를 광의의 개념인 특허라 하고 이 중에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협의의 특허라 함
- 특허는 출원을 필요요건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행하여짐
- 특허는 설권행위로 형성적 행위이고 자유재량행위임
- ※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독점적·배타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행정법상 “특허”의 행정행위임
- ② 인가(보충행위) : 제3자의 계약·합동행위 등 법률적 행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인가,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인가)
-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 요건인데, 인가는 법률적 행위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효력요건임.
- 따라서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임
- ③ 공법상 대리 : 제3자가 행할 행위를 행정청이 대리하여 행한 경우에 제3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행려병자·사망자의 유류품 처분, 체납처분절차에서 행하는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① 확인 :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권위로서 그 존부 또는 부정을 확인하는 행위, 기속재량행위이고 불가변력(확정력)발생
예) 당선인 결정,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도로구역 결정, 행정심판자격 등
- ② 공증 :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공적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
확인 = 판단의 표시인데, 공증은 인식의 표시이고 공증은 기속재량행위임
예) 부동산 등기, 외국인 등록, 토지대장예의 등재, 합격증의 발급, 영수증 교부, 여권발급 등
- ③ 통지 : 특정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위
예) 토지세목의 공고·통지, 특허출원공고, 귀화의 고시, 납세독촉, 대집행의 계고 등
- ④ 수리 : 원서·신고서·행정심판청구서 등의 제출이 형식적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임. 수리거부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로 소극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예) 혼인신고수리, 행정심판청구서 수리 등

나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으로 구분됨

■ 내부적 성립요건

- 주체에 관한 요건
 -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의 행위 : 다른기관의 필요적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음

예) 공유수면매립면허시 다른기관과 협의

- ② 권한내의 해위 : 행정기관의 직무범위내의 행위
- ③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행위 :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결정에 흠(하자)이 있어서는 아니됨

○ 내용에 관한 요건

- ① 법률상·사실상으로 실현가능하고, 관계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② 법에 위반되지 않고 공익에 적합(법의 일반원칙인 권리남용 금지, 신의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에 적합)

○ 절차에 관한 요건 : 법정의 일련의 절차를 밟고 누락이 없어야 함

- ① 신청·동의
- ② 사전통지와 이에 따른 의견제출
- ③ 행정조적내부의 협의·심의·자문·의결·동의
- ④ 기타의 법정절차

○ 형식에 관한 요건 : 법정의 문서 기타의 형식에 적합

- ① 허가를 받아야할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묵인하더라도 이를 묵시적 허가라고 볼 수 없음

■ **외부적 성립요건** : 행정행위는 외부에 대한 표시행위이므로, 행정내부의 결정(합의체 기관에서의 결정, 기관장의 결재)이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행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비로소 성립됨. 즉,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를 고시하기 이전까지는 행정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다 행정행위의 흠(하자)

- 법령상 필요한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 : 다른기관의 의결, 승인, 협의(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 행위의 적법타당성의 사전보장, 다른기관의 관장사무와의 관련성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령상 단독으로 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협력을 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음
-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상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인·허가한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의 행위이고 최소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
 - 다른법에서 인·허가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을 의제토록 한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원인의 편의차원에서 복합민원으로 간주하여 관련기관과 협의를 할 경우 다른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를 어길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됨
 -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제되는 인·허가의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시 반대 또는 부동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는 관련법상 인·허가를 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이를 어기고 행정청에서 인·허가를 할 수 없음
 - 필요할 경우 반대 또는 부동의 기관에 재협의를 통해 반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소명과 잘못이해한 부분을 납득시키고 그후 관련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음
 -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이 처분의 위법성판단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시점에서, 처분후의 사정변경 등으로 처분시에 결여되었던 법정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흠(하자)이 경미하거나 기타사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처분시에는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사후에 치유되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있음

- 무효의 행위는 치유할 수 없음
- 흠의 치유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는 사안별로 인정 또는 불인정하고 있음
다른기관의 협력(의결, 승인, 동의, 협의 등)이 결여된 경우의 추인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2013년 8월 일 인쇄

2013년 8월 일 발행

발행인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문해남

편집인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윤종호
이종현 사무관, 김남원 사무관
김정자 주무관

발행처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Tel (044)200-5260~9, Fax (044)200-5259

인쇄처 : 순풍에뿔단디자인 Tel : (042)252-0903
